

월간
재정포럼

2021. January_Vol.295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1

권두칼럼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 김유찬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 | 김문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 오종현

정책토론포트

2020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보고서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 김유찬 02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 | 김문정 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 오종현 32

정책토론포트

2020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6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보고서 발표 외 82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1년 그리고 그 이후,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면 조세와 재정 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제가 쉽게 회복된다고 하여도 조세와 재정 정책 영역의 기반적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

재정 분야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의 구체적인 흔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넘치는 유동성은 그 자체로 투자나 소비를 유발하지 못했으나 기업과 가계의 도산을 막았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를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데에 기여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소비재와 생산재 시장에서의 목표 인플레이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심각해진 자산의 양극화는 미래에 큰 과제로 남았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면 많이 풀린 유동성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자금의 순환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목표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예의 주시하며 이에 대비할 것이다. 맹렬하게 늘어난 정부부채와 그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의 우려로 금리정책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21년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발하는 해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다.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폭적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2025년까지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세가 초미의 관심이다. 또 법인세와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를 공표했다. 바이

든 정부의 미국은 무역정책에서는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을 통해 동맹국과의 연대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의 영향은 또한 자동화, 유연화, 비정규직화의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늘어나게 된 비대면 거래 및 활동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 수준으로는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정책의 역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 정책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지출 및 재난지원금 지출이 추가로 필요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방역과 백신 공급을 통하여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더라도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경제 분야의 인프라 투자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여러 정책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국가부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늘어난 국가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정 자동화라는 고용시장 변화의 장기적 추세가 코로나 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화 과정에서 줄어들게 되는 일자리의 충격을 사회안전망 강화로 완충시켜주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여가시간의 확대가 작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양극화와 저성장의 방향으로 치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 주택, 교육, 연금, 건강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적절한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

.....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 정책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

사회보험 재정은

2018년 GDP 대비

6.9%에서 2060년

23.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재정과 달리

일반 재정에서는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크지 않다.

출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현재 우선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
험제와 주택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은 2018년 GDP 대비 6.9%에서 2060년 23.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재정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은 건강보
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다.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 재
정은 효율적 비용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인 건강
보험 기여금 체계는 가능한 넓은 세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상
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
후소득보장체계의 틀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의 퇴직금제도와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양쪽에
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의 세 기둥을 흔들어 재구조화하면서 재정
적 지속가능성과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보험
재정과 달리 일반 재정에서는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
제는 크지 않다.

저출산이 장기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전망은 노동이라는 생
산요소의 감소가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도출된 것이다. 출생이 줄어도 수명 연장,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로봇이나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를 통하여 인구감소의 효과는 노동공급에 상
대적으로 마일드하게 작용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도 로봇 활용이 증가하여 생
산요소로서 노동은 부족함 없이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기
계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술환경의 진전(노동수요
감소)과 인구의 감소(노동공급의 감소)는 상충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노동공급자로서의 기능은 약해져
도 소비자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강수명의 증가, 은퇴연령의
조정은 필요하다.

조세정책의 역할

조세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주요 국가들이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늘려 대응했고 이렇게 늘어난 재정적자

와 국가부채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 화폐이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정부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국채시장의 과부하로 이자율이 상승해서 구축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국채를 적절한 규모로 인수함으로써 정부의 이자부담도 관리하고 동시에 민간 자금시장 이자율도 안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이 수준을 더 넘어서는 정도의 직·간접적인 국채인수도 중앙은행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수입의 큰 부분을 중앙은행이 국채인수에 의존한다는 MMT적 사고는 매우 나이브하다. 정책당국은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서 경기 조절(실업 최소화)을 해야 한다. 소국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적 요인이 재원조달을 더 이상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국채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생기며 이 경우 정책대안이 없다. 징수하지 않던 세금을 갑자기 필요할 때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200조의 조세수입을 220조로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110조의 조세수입을 수년 내에 220조로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는 재원조달의 기능만을 가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세제도는 항상 매우 유용한 경제정책 수단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소득분배기제(예를 들어, 소득세의 각종 공제제도), 산업지원 정책 수단들(법인세의 투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등), 환경정책 수단(환경오염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재원조달을 국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일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증세가 가능한 조세정책의 영역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해 내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

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

.....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과 국가부채를 감당해 내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

.....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또한 크게
 벌어졌다.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도
 소득 못지않게 중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가 있다. OECD(2020)의 Taxing Wages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상황이다.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G7 국가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 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하여,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실효세율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또한 크게 벌어졌다.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도 소득 못지않게 중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우선적으로 과세의 강화가 필요한 자산 분야는 부동산 보유로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1세대 1주택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예를 들어, 개인별 혹은 가구별 생애 통산 5억)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하여 불리해진다.

OECD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보고서(*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0)에 따르면 상속자산의 상속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우리나라)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하여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환경·에너지세에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에 따른 외부 불경제에 대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수송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환경·에너지세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발전 및 산업 부문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환경·에너지세 개편은 세제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여 변화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 후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율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조세제도의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일반납세자가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거래의 전 분야에서 가능해져 과세거래의 포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들의 소득세 분야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세제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국세청은 경감세율 도입으로 기존 간이과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국세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KIPF**

.....

**여러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재원조달의
다각화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¹⁾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moonkim@kipf.re.kr)

- 1) 본 원고가 발간되도록 유용한 코멘트를 해주신 원내 업무회의 참석자, 재정포럼 편집위원회, 익명의 검토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통계적 오류나 오타자 등은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 2)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시기의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1. 1. 12; 2020. 7. 15. 참조).

(단위: %)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연간 기준)	코로나19 시기 (2020년 6월 기준)
농·임·어업	-2.2	3.4
제조업	-3.2	-1.5
건설업	-5.0	-3.0
도소매·음식숙박업	-2.4	-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9	0.6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등	4.6	0.6

I. 서론

외부 경기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노동은 특히 단기에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경기충격에 대한 노동투입 변화는 기업의 조정행위를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기업의 노동조정 범위는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가 어떠한 업종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인력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어떠한 업종은 여러 노동조정 기제 중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다른 업종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노동조정을 하여 단기적 경기충격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당국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기업의 조정기제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제도 등의 설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경기충격으로 인한 산업별 노동조정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노동 행위에 대한 이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예측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의 경제 내 노동정책의 유형과 실행 정도, 경기 상황, 경기충격의 성격 등이 상이해서 직접적인 정책 함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이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조정 기제라는 점에서 본고의 내용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노동·고용 정책을 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에 사업체의 행태가 고용량, 임금, 근로

시간, 고용형태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노동 조정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 기업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초기단계 연구로서 대분류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한 집계자료를 통하여 분석단위별 평균적인 노동조정 수준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국내 문헌에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같이 고려하여 그러한 경제위기의 노동시장 영향 수준을 분석하였다. 김준(2015)에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응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김준(2015)은 외환위기 기간에는 정리해고제의 시행 및 파견근로제 도입을 통한 대규모 고용조정과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진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한다. 강순희(2018)는 외환위기 직후와 국제금융위기 직전 청년코호트의 노동시장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구직정보 수집방법, 취업 소요기간, 취업 준비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외환위기 직후의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청년 상황보다 더 열악했다고 결론 내린다.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 김대일(2007)이 있다. 김대일(2007)은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 증가, 고용창출 기반 약화, 임금격차 확대,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차유경·원숙연(2014), 차운아·정태훈(2015) 등이 있다. 차유경·원숙연(2014)은 2007년과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 및 중요성 등이 2008년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차운아·정태훈(2015)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를 측정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시점인 2008년 후반에 미스매치 지수가 높아졌다가 2009년 후반 이후에는 미스매치 지수가 낮아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량,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측면에서 노동조정에 대해 단독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집계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량 측면의
노동조정을 살펴본다.

II. 분석자료

1. 노동조정 정보 관련

본고의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의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측면의 노동조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분석자료는 우선 전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며, 자료 제공범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통계조사로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임금 대장에 기반하여 매년 6월에 실시되는 통계조사이다. 해당 조사에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특성과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소정임금, 초과근로임금,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특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보유한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른 통계조사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다.³⁾ 나아가, 고용형태 측면에서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다른 조사통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고용 관련 통계조사가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를 ① 특수형태, ② 재택/가내, ③ 파견, ④ 용역, ⑤ 일일, ⑥ 단시간, ⑦ 기간제, ⑧ 기간제 아닌 한시적, ⑨ 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동조정의 네 가지 기제인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중에서 ‘고용량’ 측면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마이크로 단위) 형태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업체가 소속된 업종과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집계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량’ 측면의 업종×규모 단위별 노동조정을 살펴본다. 현재 공개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산업대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 규모는 상용직 근로자 기준 네 개의 유형(① 5인 미만, ② 5~29인, ③ 30~299인, ④ 300인 이상) 정보를 제공한다. 본고에서 고려되는 산업코드는 총 13개이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유형 네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집단 개수는 총 52개이다.

3) 예를 들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월별조사에서는 월별 근로시간 문항이 존재하지만 이는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모두 합해진 값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되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각각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4) ‘고용량 조정’ 측면만 분석한다면 고용보험 DB 혹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 측면도 같이 검토하고자 하므로 본고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산업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가 표본에 포함되지 않거나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관측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52개보다 적은 수의 집단에 대한 집계자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정 결과를 분석할 때 ‘노동조정 주체’를 개별 사업체가 아닌 집단 전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⁵⁾ 개별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에 대한 분석내용이 더욱 흥미롭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집단 단위별로 고용량이 어떻게 조정되었고, 고용된 근로자 집단의 근로시간,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구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기간의 경우 2006~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⁶⁾ 분석기간을 2014년까지 고려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조정에 대한 장·단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업종정보가 2006~2008년까지는 8차 산업코드분류를 따르는 반면, 2009~2014년까지는 9차 산업코드분류를 따르는 만큼 일치된 산업코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 업종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⁷⁾을 참고하여 통일된 대분류 정보를 도출하고자 했다.

2. 글로벌 금융위기 변수 구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조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한 지표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업종별로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당기순이익 변화율을 활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업체의 매출액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2006~2010년 기간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기업활동조사는 행정구역,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 사업체 수, 자산,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분석할 기업활동조사의 조사 대상도 업체 수가 1개인 기업에 한정하였다.⁸⁾

- 5) 몇 가지 문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집단(특정 산업 혹은 특정 규모)에 사업체가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계자료 단위의 ‘노동조정’은 사업체의 구성효과 (composition effect)를 반영한다. 또한 집단별 노동조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충격의 노동조정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 6)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2011년 혹은 2012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그러한 지적이 맞다면,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2013~2014년 시점에서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는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 7) 본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산업 코드화 Technical Report: 12~13차(2013)의 <참고 3> 표를 참고하여 8~9차 연계 산업대분류 코드를 생성하였다. 관련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8) 기업활동조사는 기업식별코드를 제공하여 동일한 기업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을 비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에서의 기업 성과(당기순이익)를 산업 및 연도별로 집계한 값만을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활용된 ‘글로벌 금융위기’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성과(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구성(진입 및 퇴출기업 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근화·표학길(2015)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존속기업 혹은 시장의 진입·퇴출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기업의 시장 진입·퇴출이 활발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기 마련인데, 2006~2012년 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시장 퇴출로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업종별 총액을
당기순이익의 변화율로
정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반영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기업의 시장 성과변수를 업종별로 합산한 후 이렇게 합산된 시장 성과변수의 2006~2007년 평균값(A)과 2009~2010년 평균값(B)의 차분(G)을 계산하였다. 시장 성과변수의 '변화율'은 차분(G)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평균값의 평균 $((A+B)/2)$ 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⁹⁾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수 선택 차원에서는 시장 성과변수를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장 성과변수를 계산할 때에 업종별 총액 혹은 업종 내 평균값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차분' 혹은 '변화율'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충격지표의 단위를 업종이 아니라 업종 및 규모별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에서 업종별 총액을 당기순이익의 변화율로 정의하였음을 밝힌다. 매출 수준은 일차적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충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변화율과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좋으나, 본고에서는 당기순이익 관련 결과만을 제시한다. 둘째, 시장 성과변수의 기업별 평균값이 아닌 업종 내 총액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나타낼 때 업종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 성과변수의 기업 평균값을 활용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당 업종에 대한 충격 외에도 동일한 업종 내 기업 간 경쟁효과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장 성과변수의 변화율을 고려한 것은 경기충격으로 인한 시장 성과변수의 업종 내 상대적인 크기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사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지표만을 설정한 것은 '기업활동조사' 자료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분석 대상과는 달리, 상용직 기준 29인 미만 규모 관측치가 거의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규모'별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경기충격지수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¹⁰⁾

9) 변화율의 경우 기준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전후의 개별적인 수치가 아닌 전후 수치의 평균값을 기준변수로 고려하였다.

10) 글로벌 금융위기 간 지표 비교를 위해서는 [부도 1]을 참고할 수 있다.

3. 기초통계량

기본적인 기초통계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에서는 사업체 규모별 고용량, 소정임금, 초과임금,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통계량은 2006~2014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합자료에 기반하여 산업 및 업종별로 집계자료를 구성한 후 해당 자료에 대하여 사업체 규모별 기초통계량을 생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 1>에서 제시된 통계량은 각 사업체 규모별 통계량이 아닌 각 규모에 속하면서 관측 가능한 업종별·연도별 평균값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¹⁾ 이 때문에 표에 제시된 수치 자체만으로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체 규모 혹은 고용형태별 비교 수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1>의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표 1>의 주를 참고할 수 있다. 규모별 변수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직 고용인원(항목2)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하여 비정규직 고용인원(항목3)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그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비율(항목4)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난다. 분석 단위별 평균임금(항목5)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평균 근로시간(항목6)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5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근로시간(42.21시간)은 30~299인 사업체의 평균 근로시간(43.36시간)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근로시간(41.70시간)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다. 총임금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평균 임금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임금률(12.32%)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률(26.67%)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의 항목8~14까지는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 임금 중에서 초과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항목8)은 대체로 5인 미만(0.81%)에서 30~299인(3.30%) 사업체 규모에 이를 때까지 높아지다가 300인 이상(2.83%)에서 다소 낮아지는 역U자 패턴을 보인다.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항목9)이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비중(항목10)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한다.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각각 계산할 때에도(각 항목11, 항

<표 1>에 제시된 통계수치만으로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체 규모 혹은 고용형태별 비교 수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을 검토하였다.

11) 예를 들어, 5인 미만 금융업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평균치에는 그러한 업종이 배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에서는
사업체 업종별
집계자료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목12)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고용형태별로 초과근로 비중(인원)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규직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은 높은 편이나 5~29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비정규직 집단이 정규직 집단보다 더 높은 편이다.

<표 1> 집계자료 기초통계량: 사업체 규모별

(단위: 명, 천원, 시간, %)

사업체 유형	1	2	3	4	5	6	7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5인 미만	12,052	7,811	4,240	3.95	2,049	42.21	12.32
5~29인	13,835	11,502	2,333	8.90	2,842	44.27	16.34
30~299인	15,479	13,199	2,280	10.57	3,557	43.36	20.81
300인 이상	17,146	14,038	3,108	11.23	4,386	41.70	26.67
사업체 규모	8	9	10	11	12	13	14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5인 미만	0.81	1.03	6.57	6.44	4.16	0.96	0.75
5~29인	1.53	1.90	14.30	14.04	14.75	1.85	2.03
30~299인	3.30	4.20	27.71	30.07	20.59	4.48	3.27
300인 이상	2.83	4.22	31.63	31.53	31.01	4.11	4.63

- 주: 1. 항목1~14: 산업과 규모별로 구성된 집계자료 기반(가중치 적용)에 대하여 사업체 규모별로 계산한 변수별 평균값을 계산한 것임
- 2. 항목5: '임금'이란 소정임금, 초과임금, 성과급(작년도 성과급을 12로 나눈값) 합계를 의미(월별) '평균임금'은 분석단위별 임금의 총액을 분석단위별 근로자수로 나눈 값
- 3. 항목6: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의미(주별). '평균 근로시간'이란 분석단위별 근로시간의 총액을 분석단위별 근로자수 총합으로 나눈 값
- 4. 항목7: '평균 임금률'이란 분석단위별 임금의 총액을 근로시간의 총액으로 나눈 값
- 5. 항목8: '초과근로 비중(임금)'이란 분석단위별 초과근로 수당 총액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6. 항목9: '초과근로 비중(시간)'이란 분석단위별 초과근로시간 합계가 근로시간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7. 항목10: '초과근로 비중(인원)'이란 분석단위별 초과근로시간이 관찰되는 근로자 합계가 근로자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8. 항목11: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인원)'이란 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
- 9. 항목12: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인원)'이란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
- 10. 항목13: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시간)'이란 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시간)
- 11. 항목14: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시간)'이란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4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2> 집계자료 기초통계량: 사업체 업종별

(단위: 명, 천원, 시간, %)

사업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농·임·어업	154	137	17	7.7	3,997	41.2	97.7	1.3	1.4	21.3	21.3	0.0	1.4	0.0
전기·가스업	223	212	11	17.3	4,275	44.6	97.8	4.1	6.3	38.6	40.1	9.8	6.3	3.7
오락·문화·여가업	2,473	1,410	1,063	3.1	2,533	43.2	58.8	3.5	3.5	25.1	28.4	19.4	3.9	2.6
부동산·임대업	5,567	4,144	1,422	8.4	2,374	48.5	50.0	1.5	1.6	13.8	14.3	9.8	1.7	1.3
교육 서비스업	7,989	4,628	3,360	2.1	2,801	35.4	80.3	1.0	1.3	10.4	12.8	6.3	1.3	1.1
통신업	10,158	9,100	1,059	11.6	3,362	42.3	79.5	1.7	2.6	19.4	18.8	22.9	2.5	2.9
운수업	11,254	10,351	903	16.5	3,267	43.5	75.5	2.7	3.4	19.4	18.2	24.5	3.1	4.6
숙박·음식점업	12,643	6,488	6,155	2.6	2,187	46.3	47.5	3.8	4.8	28.6	29.0	25.9	4.9	4.1
건설업	14,000	9,908	4,092	5.8	3,437	41.4	83.5	1.4	2.1	11.5	11.8	14.6	2.1	3.1
금융업	17,553	14,684	2,869	7.2	4,725	41.4	114.6	1.5	2.3	24.1	25.1	17.8	2.4	2.0
광업·제조업	17,684	15,168	2,516	16.5	2,837	44.1	65.1	1.7	2.3	15.1	15.6	10.4	2.3	1.8
도소매업	32,345	26,173	6,172	8.6	2,974	44.6	67.6	1.6	2.6	17.9	16.3	26.0	2.4	3.2
사업 서비스업	39,911	34,245	5,666	9.2	3,224	42.2	76.7	1.5	2.2	17.2	17.2	17.5	2.3	1.9

주: 항목별 정의는 <표 1>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4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1]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변화율의
크기에 따라
노동조정 관련 변수가
2007년과 비교해
2010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2>에서는 사업체 업종별 집계자료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항목4)은 전기·가스업, 운수업, 광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오락·문화·여가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낮게 나타난다. 평균임금(항목5)은 금융업, 전기·가스업, 농·임·어업, 건설업 등이 높고,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오락·문화·여가업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평균 근로시간(항목6)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업 등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농·임·어업, 건설업 등이다. 임금이 낮은 업종은 평균임금은 낮고 평균 근로시간은 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며, 임금이 높은 업종은 평균임금은 높고 평균 근로시간은 짧은 금융업, 농·임·어업 등이다.

전기·가스업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만큼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난다. 임금, 시간, 인원으로 계산된 초과근로 비중은 전기·가스업에서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전기·가스업의 경우 정규직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이 40.1%, 비정규직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이 9.8%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업종의 초과근로 상당 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낮은 만큼 초과근로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교육서비스업 종사 정규직 근로자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은 12.8%로 비정규직 근로자 초과근로 비중(인원, 6.3%)의 약 2배에 해당한다.

4. 노동조정 관련 데이터 패턴

[그림 1]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율의 크기에 따라 고용량, 근로시간 등 노동조정 관련 변수가 2007년 대비 2010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횡축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를, 종축에는 노동조정과 관련한 관심변수의 2007년과 2010년 격차 수준을 나타낸다.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 큰 것으로, 양(+)의 값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축의 노동조정 관련 변수의 값이 0보다 크면 해당 변수가 2007년 대비 2010년에 증가한 것으로, 0보다 작으면 해당 변수가 2007년 대비 2010년에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은 단순통계량을

도식화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림 1]의 (a)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총근로자 수 격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클수록(당기순이익 변화율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고용인원의 변화율이 거의 없고, 금융위기의 충격이 0에 가까울수록(당기순이익 변화율의 값이 0의 값을 가질수록) 고용인원이 2007년 대비 201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충격과 고용인원 간의 그래프가 완만한 역U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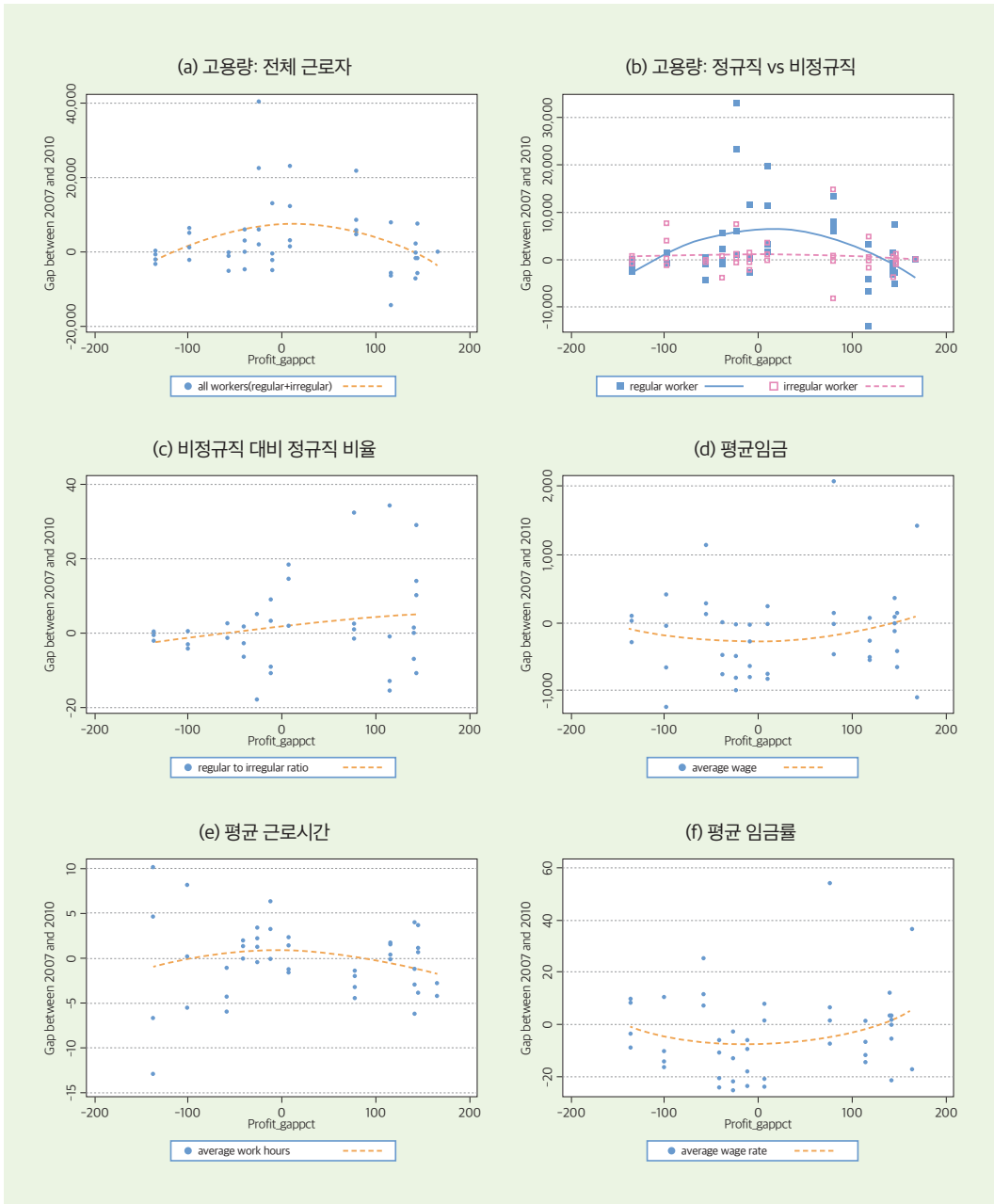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통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림1]의 (a)에서 관찰되는 역U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패턴과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변동하지 않은 반면에, 정규직 고용인원은 완만한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1]의 (c)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 충격 정도가 클수록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체가 노동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의 (b)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동조정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줄여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의 (d)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평균임금(소정임금+초과근로 수당+특별성과급)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0에 가까울수록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 혹은 양(+)의 값을 가질수록 평균임금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즉 U자형 패턴). 반면, [그림1]의 (e)에서 확인되는 ‘근로시간’의 변화는 평균임금의 데이터 패턴과 달리 역U자형 패턴을 보인다. 즉,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0에 가까울수록 근로시간은 변화하지 않지만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0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균 임금률은 [그림1]의 (f)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완만한 역U자형 패턴을 보인다.

**[그림 1]의
(b)와 (c)를 보면
노동조정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충격 정도가
클수록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체가 노동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와 노동조정 수준 (1)



주: 각 그래프의 횡축은 2006~2007년 기간과 2009~2010년 기간 간 당기순이익 변화 비율(%)로 계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며, 종축은 각 해당 변수의 2007년간 2010년간 변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 2010 및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201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가공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와 노동조정 수준 (2)



주: 각 그래프의 횡축은 2006~2007년 기간과 2009~2010년 기간 간 당기순이익의 변화 비율(%)로 계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며, 종축은 각 해당 변수의 2007년간 2010년간 변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 2010 및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201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가공

**당기순이익
지표의 특성상
노동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인과적 결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는 초과근로 비중 지표와 당기순이익 변화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2]의 (a), (b), (c)는 각각 임금, 근로시간, 인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대체로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에서 0으로 변화할 때 이러한 초과근로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된다. 반면, 당기순이익이 0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임금 기준 초과근로 비중([그림 2]의 (a))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시간 및 인원 기준 초과근로 비중은 ‘감소’ 추세에서 ‘변동 없음’ 추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임금 기준 초과근로 비중이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그림 2]의 (a))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초과근로를 통한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보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원 기준 초과근로 비중이 근로시간 기준 초과근로 비중에 비하여 변화 폭도 크고 당기순이익 변화율과의 음(-)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사업체들이 초과근로 종사 인원을 줄이고 초과근로가 필수불가결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d)와 (e)에서는 각각 정규직 근로자 집단과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 내에서의 인원 기준 초과근로 비중을 보여준다.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에서 0으로 변화할 때 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초과근로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c)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당기순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초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낮추었고, 이때 초과근로 종사인원 감소 전략이 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주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측정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지수와 노동조정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노동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라는 지표의 특성상 이러한 노동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인과적 결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당기순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값이고 이때의 ‘비용’에 노동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1]~[그림 2]에서 검토한 노동조정 변수의 변화는 당기순이익

변화율의 결과가 아닌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체의 노동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하여 2006~2007년 대비 2008년 이후부터 2014년 기간의 노동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노동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I.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1.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변수에 따른 노동조정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포착되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계량모형은 다음과 같다.

$$y_{jt} = \beta_0 + \beta_G GFC_j I(t \geq 2008) + \mu_t + \delta_j + \varepsilon_{jt} \quad \text{식 (1)}$$

여기에서 j 는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각 j 는 <표 1>에서 제시된 사업체 규모유형과 <표 2>에서 제시된 산업유형의 특정 결합(규모×산업)을 의미하며, δ_j 는 분석단위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t 는 2006~2014년 기간의 연도를 의미하며, μ_t 는 연도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ε_{jt} 는 독립항등분포(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를 따르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I(\cdot)$ 은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은 당기순이익의 변화율로 정의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의 부호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해당 변화율의 절댓값’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로 활용하였다. 즉, 식 (1)에서의 GFC (global financial crisis)는 $abs(\text{당기순이익변화율}_{\text{산업}_j} < 0)$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산업_j 는 j 가 속한 산업유형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변수에
따른 노동조정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포착되는지를
검토한다.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2012~2013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를 기간별로 구분한 다음의 회귀식도 검토한다.

$$y_{jt} = \beta_0 + \sum_{k=1}^4 \beta_{G,k} I(t \in C_k) GFC_j + \mu_t + \delta_j + \varepsilon_{jt} \quad \text{식 (1')}$$

여기에서 C_k 는 4개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2008~2009년(C_1), 2010~2011년(C_2), 2012~2013년(C_3), 2013~2014년(C_4)으로 구분하였다(준거 기간 = 2006~2007년).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y_{jt} 를 <표 1>과 <표 2>에서 정의된 14가지 변수로 상정한다.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열(1)~(14)는 식(1)에 따른 추정 결과를, 열(1t)~(14t)는 식 (1')에 따른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로 사용한 <표 4>의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GFC_j 의 변수가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만 절댓값으로 전환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β_G 가 양(음)의 값을 갖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가 클수록 종속변수의 값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열(1)~(14)를 살펴보면, 14개의 어떠한 종속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 시점 구간별 효과를 보여주는 열(1t)~(14t)에 따르면, 2012~2013년 기간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2006~2007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2006~2007년의 평균치에서 2009~2010년의 평균치를 제한 값을 활용하여 정의된 사실을 상기한다면, 해당 시점 데이터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노동 조정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정량분석의 주요 목적이므로 2008~2009년 자료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결과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분석결과 2012~2013년 기간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표 3>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포착한 경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2008년 이후 $\times GFCJ$	-16.42 (53.97)	-3.267 (43.20)	-13.15 (16.86)	-0.0276 (0.0309)	-2.897 (1.817)	-0.00951 (0.00872)	-0.0228 (0.0433)	0.00335 (0.00516)	0.00375 (0.00691)	0.00145 (0.0374)	0.0246 (0.0389)	0.00469 (0.0552)	0.00628 (0.00701)	0.00272 (0.0108)
관측치(건)	399	399	399	390	399	399	399	399	399	399	399	390	399	390
R^2	0.071	0.069	0.072	0.040	0.124	0.583	0.342	0.029	0.035	0.051	0.051	0.068	0.035	0.038
집단 수(개)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구분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1t)	(2t)	(3t)	(4t)	(5t)	(6t)	(7t)	(8t)	(9t)	(10t)	(11t)	(12t)	(13t)
2008-2009년 $\times GFCJ$	-7.253 (67.50)	0.216 (53.96)	-7.468 (21.11)	-0.0117 (0.0385)	-0.192 (2.260)	-0.00654 (0.0109)	0.00781 (0.0542)	0.00377 (0.00645)	0.00633 (0.00864)	0.0345 (0.0467)	0.0719 (0.0485)	0.0388 (0.0690)	0.0103 (0.00875)	0.0100 (0.0135)
2010-2011년 $\times GFCJ$	-0.324 (67.50)	14.77 (53.97)	-15.09 (21.11)	-0.0105 (0.0384)	-3.173 (2.261)	-0.0106 (0.0109)	-0.0294 (0.0542)	0.00107 (0.00645)	-0.00316 (0.00864)	-0.0254 (0.0467)	0.00202 (0.0485)	-0.0148 (0.0690)	-0.00138 (0.00875)	0.00279 (0.0135)
2012-2013년 $\times GFCJ$	-56.56 (67.51)	-44.84 (53.97)	-11.72 (21.12)	-0.0718* (0.0385)	-5.144** (2.261)	-0.0195* (0.0109)	-0.0445 (0.0542)	0.00513 (0.00645)	0.00689 (0.00864)	0.0127 (0.0467)	0.0233 (0.0485)	0.00105 (0.0690)	0.00833 (0.00875)	-0.00338 (0.0135)
2014년 $\times GFCJ$	13.34 (82.67)	36.82 (66.10)	-23.49 (25.86)	-0.00294 (0.0484)	-3.261 (2.769)	0.00674 (0.0133)	-0.0277 (0.0664)	0.00354 (0.00790)	0.00613 (0.0106)	-0.0335 (0.0573)	-0.0224 (0.0594)	-0.0191 (0.0868)	0.00934 (0.0107)	-1.44e-06 (0.0170)
관측치(건)	399	399	399	390	399	399	399	399	399	399	399	390	399	390
R^2	0.074	0.074	0.073	0.051	0.136	0.588	0.344	0.030	0.040	0.057	0.060	0.070	0.041	0.041
집단 수(개)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주: 1. 식(1)과 식(1)에 대한 추정결과를 의미. 열(1)-(14) (총은 (1b)-(14b)에 대한 정의는 <표 1>의 주를 참조

2. 분석단위는 산업 및 규모 유형별 결함단위를 의미하며, 고려한 산업유형은 <표 2>, 규모유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3. 각 집계자료 내 관측치 기반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4. 모든 회귀식에는 상수, 분석단위별 고정효과가 통제된 것임

5.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4 및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201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금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충격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6~2014년 전체 시점변수를 모두 사용한 결과와 일치한다.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당기순이익이 음(-)의 변화율을 겪은 경우, 2012~2013년 기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시간당 임금(임금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감소는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과근로 가능성이 낮고 근로시간 자체가 정규직보다 짧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감소’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의 감소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표 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이러한 노동조정 결과가 2010~2011년이 아닌 2012~2013년에 발현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일 수 있다. 모형에서 정의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가 잘 설정된 것이라면, 이는 곧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조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규직 내 초과근로 비중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이 정량분석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정량분석의 결과만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충격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여 노동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¹²⁾

12) 초과근로의 조정으로는 인건비와 같은 노동 관련 고정비용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인원을 줄이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사업체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인원이 줄어들에 따라 업무 강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초과근로 수요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경기불황 시기에 대한 노동조정 행위가 산업 및 규모 유형별 분석 단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하였으며 금융위기 충격지표를 포착하기 위하여 2006~2007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2009~2010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을 정의하였다.

정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로 2012~2013년 기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초과근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을 상대적으로 더 증원함에 따라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정량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고용량 자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량 감소분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효과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대면서비스 중심 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초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초과근로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평균 근로시간의 현저한 감소는 평균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충격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효과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방향성이 분명하지는 않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직, 일용직 같은 종사상 지위를 가진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할 때, 정규직 비중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시대에 경영방침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정규직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규직 비율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우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근로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이로 인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

**코로나19
경기 충격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과 복지 중간영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들은 기존의 월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2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일자리는 과세소득을 양성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세수입 운영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유연한 형태를 고려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¹³⁾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가구소득의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근로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가구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위 소득 가구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도기에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과 복지 중간 영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⁴⁾

보다 설득력 있는 정량분석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정량분석 설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산업 및 규모 유형별 집계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개별 사업체'의 '평균적인 노동조정' 행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개별 사업체 자료로 분석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조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산업 및 규모 유형별 분석단위 내에서는 고용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분석단위(규모×업종) 간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정 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및 정량분석 설계상의 개선을 피함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고려한 엄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13)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약 475만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69.2%(약 330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 검색일자: 2020. 11. 10.).

14) 최제민 외(2018)는 금융위기 이후 총가구소득(근로소득, 이 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가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크게 악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 강순희,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8(4), 2018, pp. 1-29.
-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경제학연구』, 55(4), 2007, pp. 473-502.
- 김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18(3), 2015, pp. 68-88.
- 이근희·표학길, 「기업동학, 자원재분배 및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기업활동조사(2006~2012)」에 기초한 패널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1(3), 2015, pp. 43-114.
- 차운아·정태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측정」, 『경제연구』, 33(4), 2015, pp. 133-156.
- 차유경·원숙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23(3), 2014, pp. 303-328.
- 최제민·김성현·박상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6(1), 2018, pp. 115-142.
- 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 검색일자: 2020. 11. 10.
- 통계청,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보도자료, 2011. 1. 1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940&pageNo=22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검색일자: 2020. 11. 2.
- _____, 「2020년 6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2020. 7. 1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3865, 검색일자: 2020. 11. 2.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산업 코드화 Technical Report: 12~13차』, 2013. 1.,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View.do?key=151>

&bbsNo=42&nttNo=101406, 검색일자: 2020. 11. 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 2006~2014, <http://laborstat.moel.go.kr/hmp/cstmrYard/rawDtaReqst.do?menuId=001000110012685266&leftMenuId=0010001100126>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https://mdis.kostat.go.kr/index.do>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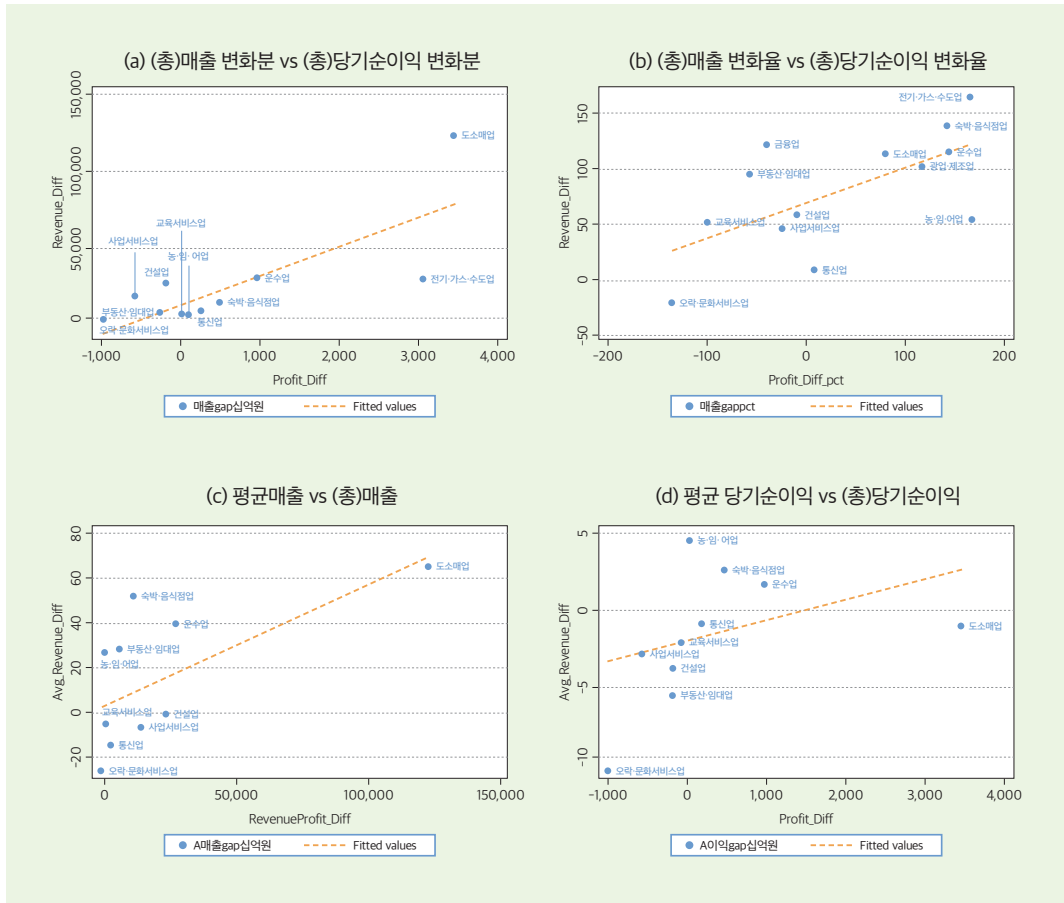
<부표 1> 본고의 분석에서 정의된 산업대분류

본고에서 정의한 산업분류	8차 산업분류	9차 산업분류
농·임·어업	A, B	A
광업·제조업	C, D	B, C
건설업	F	F
전기·가스·수도업	E	D
도·소매업	G	G
숙박·음식점업	H	I
운수업	I	H
통신업	J	J
금융업	K	K
부동산·임대업	L	L
보건·사회복지 사업	P	Q
교육서비스업	O	P
오락·문화·서비스업	Q	R
공공행정	N	O
사업서비스업	M	M, N

출처: 저자 작성

[부도 1]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 비교

(단위: 십억원, %)



주: 이상치 제거 차원에서 각 그래프에서 특정 업종을 배제함

(a): 금융업, 광업·제조업 제외

(c), (d): 금융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제외

출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¹⁾



오중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jhoh@kipf.re.kr)

I. 서론

정부의 정책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실업률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조세특례를 통한 고용지원 정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세특례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이러한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2017년 이후 대폭 확대되었다. 2017년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로 통합되면서 조세특례의 고용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17~2018년의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대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연결한 자료를

1) 본 연구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본원의 장우현 박사, 김문정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활용한다. 자료의 기간은 2016~2018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월간자료이며,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자료는 연간자료이다.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특히 본 연구와 유사한 자료 및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로는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과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가 있다. 두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의 경우 2016년까지의 자료만 이용해 2017~2018년의 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2016~2018년의 자료를 활용해 최근의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는 노동조정비용에 따라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로 조세특례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의 2017년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조세특례의 경우 2017년보다 2018년 제도 변화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2018년의 정책 변화도 고려하여 분석한다. 또한 분석 대상 업종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도 포함하여 분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한다. 제Ⅱ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현황 및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분석방법과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Ⅱ. 고용지원 조세특례 제도 변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8~2019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의 합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502억원이었다. 이러한 조세지출 규모가 2018년에는 3,0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9,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배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8년과 2019년 전체 조세지출 확대 규모에서 두 제도로 인한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52%

본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대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연결한 자료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가
2019년에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은
최근 조세특례가
과거와 비교해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되었음을
시사한다.

와 11.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조세특례가 과거와 비교해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제도 중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확대 폭이 컸다.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831억원에서 2018년 2,098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뒤 2019년 7,926억원으로 다시 약 3.8배 확대되었다. 2년간 전체적으로는 약 9.5배 확대된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671억원에서 2018년 909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한 뒤 2019년 1,796억원으로 약 2.0배 확대되어, 2년간 총 2.7배 확대되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조세지출 확대규모가 「(청년)고용증대세제」보다는 작지만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는 아니다.

<표 1>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지출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구분	조세지출 규모			전년 대비 증가분	
	2017	2018	2019	2018	2019
총조세지출(A)	396,769	439,533	495,700	42,764	56,167
일자리 창출 조세지출 합계(B=C+D)	1,502	3,007	9,722	1,505	6,715
비중(B/A)	0.38	0.68	1.96	3.52	11.96
「(청년)고용증대세제」(C)	831	2,098	7,926	1,267	5,828
비중(C/A)	0.21	0.48	1.60	2.96	10.38
「사회보험료세액공제」(D)	671	909	1,796	238	887
비중(D/A)	0.17	0.21	0.36	0.56	1.58

주: 1. 각 연도 실적 기준
2.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의 합계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9.;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9.;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0. 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가 2018년과 2019년 크게 확대된 것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17년에 변화한 제도는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점인 2018년의 조세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2018년에 변화한 제도 또한 1년 뒤인 2019년의 조세지출 규모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2>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제도 변화

공포일	내 용
2015년 12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2017년 4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확대
2017년 12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2월 31일 「청년고용증대세제」(제29조의5) 일몰 도래 - 2017년 12월 31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일몰 도래 수도권 밖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2018년 12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에 대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2년 지원에서 3년 지원으로 변화 대기업 등 그 외 기업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출처: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 <표 VI-2>

2018년과 2019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 확대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표 3>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변화

(단위: 만원)

고용 증가 인원 구분	기업 구분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5~2016	2017	2018	2019
청년(등)	수도권 밖 중소기업	500	1,000	1,100	1,200
	수도권 내 중소기업			1,000	1,100
	중견기업		700	800	
	그 외 기업	200	300	300	400
그 외	수도권 밖 중소기업	-		770	770
	수도권 내 중소기업			700	700
	중견기업			450	450
	그 외 기업			-	-

출처: 오종현(2019), p. 6, <표 3>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세액공제 규모와
적용기간이
확대되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7~2018년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 12월에 도입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도입 당시 청년 정규직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였다. 2017년에는 이러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의 경우 청년 정규직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한하여 1,1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었다.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는 수도권 밖 중소기업의 경우 77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2019년에도 청년 정규직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100만원씩 추가 확대되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2018년부터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확대되었다. 2017년까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은 1년이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인원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기업이 이러한 근로자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1년이 아닌 다년간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년도 세액공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기간이 2018년에는 2년, 2019년부터는 3년으로 확대되었고,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2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의 확대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는 2020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2019년까지의 조세지출 규모의 변화에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기간의 확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어 기업들이 동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2018년부터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비교해 공제율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증가 시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때 공제율은 청년 상시근로

<표 4>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제도 변화

공포일	내 용
2011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전문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도입
2014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
2016년 12월 20일	•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증가 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
2017년 12월 19일	•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킨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도입 • 조문 명칭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허용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

출처: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 <표 VI-3>

자의 경우 100%, 그 외 상시근로자는 50%를 적용한다. 다만, 2017년부터 공제율 100%를 적용하는 상시근로자에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었고,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그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이 50%보다 높은 75%를 적용하였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또한 2018년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의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인원 증가 시 인건비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허용되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조세특례이다. 이 제도는 별다른 요건 없이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세액의 5~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용 요건이 포함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8년부터 시행된 두 제도의 중복 적용 허용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또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등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모두 청년고용을 우대하므로 본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가 전체 고용인원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청년고용인원에 미친 영향도 분석한다.

Ⅲ.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고에서는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와 마찬가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5세 단위 연령대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한국기업데이터(KED)에는 기업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업종과 기업규모를 구분하기 위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업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된다. 한편,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와 달리 본고의 분석자료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도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료의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개월간이다. 다만,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정보는 연간자료로만 존재한다. 김문정·오종현·조원기(2020)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자료가 2020년 3월까지 존재하여 분석에 따라 2019년 이후 기간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에 한국기업데이터(KED)에 포함된 매출액, 자산 등의 재무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2018년까지만 이용 가능해 분석기간을 2018년으로 한정한다.²⁾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모두 청년고용을 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가 전체 고용인원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청년고용인원에 미친 영향도 분석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은 일반적인 경우 29세 이하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년고용인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29세 이하의 피보험자 수로 정의한다.

2. 분석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에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대기업의 경우 제도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확대 폭을

2) 재무정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자료기간을 2019년 12월까지로 증가시켜도 분석결과는 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5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중견기업은 2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100만원으로 제도 변화의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달랐다. 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제」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도 중소기업이 700~770만원으로 가장 컸고, 중견기업은 450만원이었으며,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2018년에 적용된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또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었다. 한편,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확대 또한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본고는 2017~2018년 제도 변화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기업군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제도 변화에 따른 고용인원 증가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이중차분법에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두 가지로 설정한다. 첫 번째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하는 것으로 통제집단을 대기업, 처치집단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하는 것으로 통제집단을 중견기업, 처치집단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한국기업데이터(KED)는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에 가까운 중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회귀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설정한다. 분석자료가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추정방법은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식 (1)에서 β^{2018} 은 2018년 제도 변화로 인한 효과를, β^{2017} 은 2017년 제도 변화로 인한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β^{2017} 또는 β^{2018}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될 경우 2017년 또는 2018년의 제도 변화가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og(Y_{it}) = \beta^{2018}(TG_i \times d_t^{2018}) + \beta^{2017}(TG_i \times d_t^{2017}) + \gamma^{2018}d_t^{2018} + \gamma^{2017}d_t^{2017} + X_{it}\delta + \mu_i + \lambda_t + c + \varepsilon_{it} \quad \text{식 (1)}$$

- Y_{it} 는 종속변수로 i 기업 t 시점의 전체 또는 청년고용인원

2017~2018년의
제도 변화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측정된 전체 근로자 수를
 매월 5인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 TG_i 는 처치집단 더미변수(처치집단 = 1)
- d_i^{2018} 는 2018년 이후 기간 더미변수(2018년 이후 = 1)
- d_i^{2017} 는 2017년 이후 기간 더미변수(2017년 이후 = 1)
- X_{it} 는 통제변수로 매출액, 자산
- μ_i 는 기업 i 의 고정효과
- λ_t 는 시간 고정효과
- c 는 상수
- ε_{it} 는 오차항

한편, 앞의 분석과 비교해 다음의 변형된 분석도 고려한다. 이는 2017년은 일종의 제도 변화의 이행기로 간주해 분석에서 제외하고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귀방정식은 식 (2)와 같이 설정하고 2017년이 제외된 2016년과 2018년 자료만 분석에 포함시킨다. 여기서 β^{2018} 은 식 (1)과 달리 2017~2018년 전체 제도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다. 즉, 식 (1)과 비교해 식 (2)는 2017~2018년의 모든 제도 변화를 하나의 추정치를 통해 분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log(Y_{it}) = \beta^{2018} (TG_i \times d_i^{2018}) + \gamma^{2018} d_i^{2018} + X_{it}\delta + \mu_i + \lambda_t + c + \varepsilon_{it}$$

식 (2)

3. 기초통계량

본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표본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여 분석한다. 먼저 분석 대상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측정된 전체 근로자 수를 매월 5인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한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고용증대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세제혜택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분석 대상 기간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조세지출을 통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해당 기업은 과세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작다면 조세특례

<표 5> 분석 대상 기업 수

(단위: 개, %)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기업 수	전체	2,710	1,931	779
	대기업	378	244	134
	중견기업	203	138	65
	중기업	2,129	1,549	580
비중	전체	100	71.25	28.75
	대기업	13.95	9.00	4.94
	중견기업	7.49	5.09	2.40
	중기업	78.56	57.16	21.4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이용 가능성도 그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 자의 적일 수 있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규모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국기업데이터(KED)에 나타난 분류기준을 따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 상한이 존재한다. 이에 먼저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단 중견기업으로 조정하였다. 그런 다음 2016~2018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은 다시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산이 5천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출액에 따라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조정하여 분류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가 분석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업규모에 따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의 특성상 이러한 분류 기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분석에 포함된 기업은 총 2,710개이다. 이 중 대기업이 378개, 중견기업이 203개, 중기업이 2,129개로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95%, 7.49%, 78.56%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1,931개로 전체 표본의 71.25%를 차지하며, 도소매업에 속한 기업은 779개로 28.75%를 차지한다.

각 집단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및 청년고용인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규모는 기업의 재무 정보에 포함된 자산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모든 집단에서 평균적인 전체 고용인원, 청년고용인원,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같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가 분석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표 6> 전체 업종의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십억원)

구분	관측치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기업	전체 고용	378	1,125.0	5,651.0	6.3	99,006.0	1,163.0	5,639.0	6.0	98,010.0	1,213.0	5,864.0	6.4	101,676.0
	청년고용	378	291.0	1,452.0	0.0	24,079.0	300.4	1,391.0	0.0	22,205.0	312.5	1,415.0	0.0	21,923.0
	자산규모	378	1,555.0	9,552.0	8.7	174,803.0	1,716.0	10,898.0	13.4	198,241.0	1,845.0	12,066.0	14.6	219,021.0
중견기업	매출액	378	1,444.0	7,314.0	12.5	133,947.0	1,697.0	8,895.0	17.5	161,915.0	1,838.0	9,507.0	17.2	170,382.0
	영업이익	378	121.6	743.5	1.2	13,647.0	211.4	1,928.0	1.2	34,857.0	237.3	2,481.0	1.1	43,699.0
	당기순이익	378	99.0	631.9	1.1	11,580.0	173.4	1,580.0	1.1	28,801.0	186.0	1,864.0	1.3	32,815.0
중견기업	전체 고용	203	258.0	237.4	8.5	1,595.0	266.8	254.4	10.4	1,900.0	283.2	282.1	11.4	2,258.0
	청년고용	203	63.0	103.5	0.0	843.3	68.2	120.6	0.0	1,002.0	75.6	144.2	0.7	1,211.0
	자산규모	203	180.6	132.0	13.2	1,237.0	193.3	135.2	30.0	1,199.0	209.5	143.6	39.9	1,227.0
중견기업	매출액	203	199.0	64.0	24.1	364.4	219.3	57.4	33.1	347.5	239.2	63.4	52.0	513.7
	영업이익	203	16.2	13.8	1.3	106.7	17.9	13.7	1.9	82.9	19.7	20.4	1.1	203.8
	당기순이익	203	15.1	17.9	1.3	176.6	15.2	13.2	1.0	93.7	17.6	19.6	1.0	159.0
중기기업	전체 고용	2,129	67.3	63.6	5.6	800.0	71.3	66.8	5.0	826.1	74.2	69.7	5.1	887.7
	청년고용	2,129	14.1	19.9	0.0	344.0	15.2	21.5	0.0	336.4	15.8	23.2	0.0	346.8
	자산규모	2,129	32.6	32.1	2.7	444.9	36.1	33.6	3.8	440.6	39.5	35.8	3.9	483.3
중기기업	매출액	2,129	34.0	20.7	4.2	137.3	37.4	21.5	4.0	140.7	39.0	22.5	4.1	149.4
	영업이익	2,129	3.9	3.1	1.0	27.8	4.3	3.5	1.0	45.3	4.2	3.5	1.0	39.1
	당기순이익	2,129	3.4	3.0	1.0	46.8	3.6	3.3	1.0	51.7	3.7	3.7	1.0	67.6

주: 고용인원은 각 연도의 매월 평균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제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십억원)

구분	관측치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기업	전체 고용	244	1,250.0	6,708.0	9.2	99,006.0	1,272.0	6,660.0	8.2	98,010.0	1,319.0	6,928.0	8.0	101,676.0
	청년고용	244	295.1	1,708.0	0.0	24,079.0	288.5	1,565.0	0.0	22,205.0	291.7	1,557.0	0.0	21,923.0
	자산규모	244	2,074.0	11,819.0	8.7	174,803.0	2,299.0	13,493.0	13.4	198,241.0	2,488.0	14,949.0	14.6	219,021.0
	매출액	244	1,779.0	9,039.0	12.5	133,947.0	2,092.0	10,989.0	17.5	161,915.0	2,275.0	11,739.0	17.2	170,382.0
	영업이익	244	164.5	921.7	1.5	13,647.0	302.0	2,396.0	1.2	34,857.0	343.4	3,085.0	1.1	43,699.0
중견기업	당기순이익	244	134.7	783.8	1.1	11,580.0	246.1	1,964.0	1.1	28,801.0	267.5	2,318.0	1.3	32,815.0
	전체 고용	138	295.6	212.3	11.6	965.9	299.2	210.8	11.5	920.3	312.4	222.2	11.4	945.6
	청년고용	138	65.1	73.7	0.0	425.6	67.5	77.1	0.0	433.5	73.3	92.3	0.7	585.5
	자산규모	138	211.0	139.9	25.1	1,237.0	223.6	143.2	30.9	1,199.0	240.5	151.4	44.8	1,227.0
	매출액	138	202.5	66.4	24.1	364.4	219.5	58.5	33.1	347.5	233.6	63.5	52.0	440.3
중소기업	영업이익	138	18.5	13.9	2.9	106.7	20.4	14.2	2.7	82.9	21.0	16.5	1.1	77.1
	당기순이익	138	17.5	19.1	1.4	176.6	17.5	14.4	1.0	93.7	19.3	18.6	1.0	151.1
	전체 고용	1,549	76.6	65.9	6.3	800.0	80.8	69.1	5.0	826.1	83.7	71.6	5.3	887.7
	청년고용	1,549	15.2	19.3	0.0	344.0	16.4	21.0	0.0	336.4	17.0	22.3	0.0	346.8
	자산규모	1,549	35.6	32.9	2.7	359.2	39.3	34.6	4.6	372.3	42.6	36.6	5.1	483.3
총기업	매출액	1,549	34.7	21.2	4.2	137.3	38.1	21.8	4.0	140.7	39.4	22.7	4.1	149.4
	영업이익	1,549	4.1	3.4	1.0	27.8	4.5	3.6	1.0	32.6	4.2	3.4	1.0	37.0
	당기순이익	1,549	3.6	3.1	1.0	46.8	3.7	3.3	1.0	42.1	3.8	3.5	1.0	50.5

주: 고용인원은 각 연도의 매월 평균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8> 도소매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십억원)

구분	관측치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 기 업	전체 고용	134	898.8	2,870.0	6.3	30,112.0	963.4	3,006.0	6.0	30,606.0	1,021.0	3,120.0	6.4	31,702.0		
	청년고용	134	283.6	806.3	0.0	5,766.0	322.2	1,006.0	0.0	8,628.0	350.4	1,113.0	0.0	9,726.0		
	자산규모	134	611.3	1,427.0	11.6	13,815.0	654.0	1,495.0	13.9	14,347.0	674.1	1,490.0	15.3	14,139.0		
	매출액	134	832.8	1,339.0	23.8	11,631.0	977.6	1,674.0	33.4	12,451.0	1,043.0	1,858.0	33.3	13,587.0		
	영업이익	134	43.5	72.1	1.2	633.2	46.5	73.6	1.7	638.4	44.0	64.9	2.2	489.3		
	당기순이익	134	33.9	53.3	1.2	384.0	41.0	77.6	1.1	640.9	37.6	57.2	1.3	368.8		
	전체 고용	65	178.1	268.2	8.5	1,595.0	198.0	319.5	10.4	1,900.0	221.1	373.8	17.1	2,258.0		
	청년고용	65	58.6	148.9	0.4	843.3	69.6	182.3	2.3	1,002.0	80.4	217.6	1.8	1,211.0		
	자산규모	65	116.0	82.5	13.2	398.1	129.0	87.3	30.0	472.4	143.9	97.5	39.9	530.1		
	매출액	65	191.6	58.3	48.3	303.5	218.9	55.6	49.8	321.6	251.1	62.1	137.6	513.7		
중 견 기 업	영업이익	65	11.3	12.1	1.3	56.1	12.6	10.9	1.9	46.2	16.9	26.8	1.8	203.8		
	당기순이익	65	10.1	13.7	1.3	85.6	10.2	8.3	1.2	32.5	13.8	21.3	1.1	159.0		
	전체 고용	580	42.4	49.2	5.6	574.5	46.0	52.5	5.4	500.5	48.9	57.5	5.1	620.5		
	청년고용	580	11.1	21.1	0.0	261.3	12.1	22.5	0.0	261.6	12.7	25.2	0.0	296.3		
	자산규모	580	24.6	28.3	2.8	444.9	27.8	29.3	3.8	440.6	31.1	32.1	3.9	459.4		
	매출액	580	32.2	19.4	4.4	99.8	35.6	20.5	5.5	98.0	38.0	22.0	5.6	99.9		
	영업이익	580	3.4	2.3	1.0	21.0	3.8	3.2	1.0	45.3	4.1	3.6	1.1	39.1		
	당기순이익	580	2.8	2.5	1.0	41.6	3.2	3.4	1.0	51.7	3.4	4.0	1.0	67.6		

주: 고용인원은 각 연도의 매월 평균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산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제조업에 속한 대기업의 평균 청년고용 인원은 2017년 295.1명에서 2018년 288.5명으로 감소하였고,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속한 중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또한 2017년 45억원에서 2018년 42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기초통계량에서 확인되는 고용인원 증가 추세 중 일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에 의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조세특례가 고용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의 고용증가 추세가 더 빨라야 하고, 중견기업보다는 중기기업의 고용증가 추세가 더 빨라야만 한다. 이는 중기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의 변화 폭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통계량에 나타나듯이 고용증가 인원은 기업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단순히 추세만 비교하기보다는 자산규모, 매출액 등의 변수를 이용해 기업규모의 변화를 통제하여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한다.³⁾

IV. 분석결과

1. 기본 분석

전체 고용효과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모형 (1)과 (2)는 각각 회귀방정식 (1)과 (2)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9>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용한 분석에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의미하는 처치집단과 처치기간의 교차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중기기업과 중견기업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도소매업의 경우 처치집단과 처치기간의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른 값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에서는 2017년의 제도 변화가 고용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추정되었다. 제조업과 전체 표본에서 모형 (1)을 통해 분석한 경우 중기기업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의 교차항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모형 (2)를 통해 분석한 경우에도

각 집단별

기초통계량을 보면

고용증가 인원은

기업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자산규모, 매출액

등의 변수를 이용해

기업규모의 변화를

통제하여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한다.

3) 자산규모, 매출액 등의 재무정보는 고용인원과 내생성의 관계가 있다. 이에 당기보다는 전기 변수를 이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기 변수를 이용할 경우 2016년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어 2017년의 제도 변화를 고려한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내생성을 우려하여 기업규모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석결과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결과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기업과 2018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의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1)에서 2018년 제도 변화가 고용증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것을 통해 모형 (2)의 결과 또한 2018년 보다는 2017년 제도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중차분법을 통한 분석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변화 이전 기간에 대한 평행추세(parallel trend 또는 common trend)의 가정이 성립해야만 한다. 이에 제도 변화 이전 시점인 2016년 7~12월의 평행추세에 대해 검정한 결과, 중견기업과 대기업 표본에서 평행추세가 확인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표본에서 도소매업에 한정된 표본 또한 제도 변화 이전 기간의 평행추세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세특례의 제도 변화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분석결과는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한 분석에서 전체 기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된 표본의 경우 제도 변화 이전 평행추세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 변화 3개월 전부터 해당 표본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는 동 제도의 변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중견기업보다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추세가 조세특례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전체 표본과 제조업에 한정된 표본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한 분석에서 2017년의 조세특례제도 변화가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의 고용 변화에는 조세특례제도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상태의 변화에 주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 변수로 자산과 매출액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회귀분석에서 자산과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고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고용의 변화가 경영 상황을 의미하는 매출액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집단인 중견기업과 대기업 표본에서 분석한 고용의 매출액에 대한 탄력성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집단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표본에서 분석한 고용의 매출액에 대한 탄력성이 모든 회귀분석에서 더 크게 추정되었다.

<표 9> 전체 고용증대 효과(기본 분석)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집단: 중견기업, 통제집단: 대기업>						
중견기업×2018년 이후	0.004 (0.014)	-0.015 (0.020)	0.006 (0.019)	-0.013 (0.026)	0.003 (0.018)	-0.010 (0.030)
중견기업×2017년 이후	-0.016 (0.015)		-0.018 (0.020)		-0.008 (0.018)	
2018년 이후	0.019 (0.016)	0.053*** (0.016)	0.014 (0.024)	0.025 (0.022)	0.029** (0.011)	0.114*** (0.023)
2017년 이후	0.040** (0.016)		0.014 (0.023)		0.091*** (0.019)	
ln(매출액)	0.121*** (0.033)	0.127*** (0.042)	0.106*** (0.037)	0.121** (0.048)	0.130* (0.068)	0.115 (0.083)
ln(자산)	0.176*** (0.042)	0.213*** (0.050)	0.161*** (0.054)	0.181*** (0.068)	0.167*** (0.062)	0.226*** (0.072)
상수	-0.329 (0.808)	-1.166 (0.802)	0.369 (0.928)	-0.318 (1.072)	-0.548 (1.318)	-1.380 (1.130)
관측치	20,916	13,944	13,752	9,168	7,164	4,776
기업 수	581	581	382	382	199	199
결정계수(R ²)	0.044	0.064	0.018	0.027	0.266	0.313
<처치집단: 중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2018년 이후	0.005 (0.013)	0.036** (0.018)	0.009 (0.017)	0.046** (0.023)	0.001 (0.016)	0.023 (0.027)
중기업×2017년 이후	0.029** (0.013)		0.036** (0.017)		0.018 (0.017)	
2018년 이후	-0.001 (0.013)	0.026 (0.019)	-0.009 (0.017)	0.002 (0.025)	0.017 (0.016)	0.082*** (0.028)
2017년 이후	0.040*** (0.013)		0.021 (0.017)		0.082*** (0.018)	
ln(매출액)	0.228*** (0.018)	0.279*** (0.025)	0.221*** (0.021)	0.276*** (0.028)	0.246*** (0.039)	0.285*** (0.056)
ln(자산)	0.154*** (0.017)	0.164*** (0.021)	0.143*** (0.019)	0.148*** (0.023)	0.155*** (0.031)	0.173*** (0.040)
상수	-2.654*** (0.356)	-3.698*** (0.430)	-2.172*** (0.383)	-3.214*** (0.454)	-3.429*** (0.717)	-4.390*** (0.884)
관측치	83,952	55,968	60,732	40,488	23,220	15,480
기업 수	2,332	2,332	1,687	1,687	645	645
결정계수(R ²)	0.184	0.238	0.147	0.194	0.287	0.346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0> 전체 고용에 대한 평행추세 검증(중견기업과 대기업 표본)

구분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2017년 제외)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중견기업×6개월 전	0.022 (0.015)	0.031 (0.021)	0.008 (0.011)	0.022 (0.015)	0.031 (0.021)	0.008 (0.011)
중견기업×5개월 전	-0.011 (0.015)	-0.016 (0.021)	0.001 (0.016)	-0.011 (0.015)	-0.016 (0.021)	0.001 (0.016)
중견기업×4개월 전	-0.009 (0.014)	-0.012 (0.019)	-0.002 (0.017)	-0.009 (0.014)	-0.012 (0.019)	-0.002 (0.017)
중견기업×3개월 전	-0.002 (0.016)	0.003 (0.022)	-0.011 (0.018)	-0.002 (0.016)	0.003 (0.022)	-0.011 (0.018)
중견기업×2개월 전	0.001 (0.015)	0.009 (0.021)	-0.012 (0.019)	0.001 (0.015)	0.009 (0.021)	-0.012 (0.019)
중견기업×1개월 전	-0.002 (0.014)	0.005 (0.019)	-0.012 (0.020)	-0.002 (0.014)	0.005 (0.019)	-0.012 (0.020)
중견기업×제도 변화 시점	-0.025 (0.016)	-0.025 (0.022)	-0.024 (0.019)	-0.032 (0.026)	-0.023 (0.035)	-0.040 (0.035)
중견기업×1개월 후	-0.019 (0.016)	-0.014 (0.022)	-0.026 (0.021)	-0.052* (0.028)	-0.058 (0.038)	-0.032 (0.034)
중견기업×2개월 후	-0.017 (0.025)	-0.018 (0.036)	-0.009 (0.022)	-0.013 (0.024)	-0.006 (0.032)	-0.021 (0.033)
중견기업×3개월 후	-0.000 (0.023)	0.005 (0.033)	-0.005 (0.022)	0.016 (0.024)	0.037 (0.031)	-0.016 (0.032)
중견기업×4개월 후	-0.039 (0.024)	-0.051 (0.034)	-0.010 (0.022)	-0.020 (0.027)	-0.016 (0.036)	-0.020 (0.034)
중견기업×5개월 후	-0.004 (0.018)	0.001 (0.025)	-0.010 (0.024)	0.004 (0.027)	0.015 (0.036)	-0.003 (0.034)
중견기업×6개월 이후 전체	-0.013 (0.020)	-0.012 (0.026)	-0.007 (0.031)	-0.014 (0.026)	-0.013 (0.034)	-0.003 (0.036)
ln(매출액)	0.176*** (0.042)	0.161*** (0.054)	0.167*** (0.062)	0.213*** (0.050)	0.181*** (0.068)	0.226*** (0.072)
ln(자산)	0.121*** (0.033)	0.106*** (0.037)	0.130* (0.068)	0.127*** (0.042)	0.121** (0.048)	0.115 (0.083)
상수	-0.333 (0.807)	0.360 (0.927)	-0.545 (1.319)	-1.166 (0.803)	-0.318 (1.073)	-1.380 (1.131)
관측치 기업 수	20,916 581	13,752 382	7,164 199	13,944 581	9,168 382	4,776 199
결정계수(R ²)	0.044	0.019	0.267	0.065	0.028	0.314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1> 전체 고용에 대한 평행추세 검정(중기업과 중견기업 표본)

구분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2017년 제외)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중기업×6개월 전	0.007 (0.008)	0.012 (0.011)	-0.001 (0.010)	0.007 (0.008)	0.012 (0.011)	-0.001 (0.010)
중기업×5개월 전	0.013 (0.009)	0.018 (0.011)	0.005 (0.015)	0.013 (0.009)	0.018 (0.011)	0.005 (0.015)
중기업×4개월 전	0.014 (0.010)	0.018 (0.012)	0.008 (0.016)	0.014 (0.010)	0.018 (0.012)	0.008 (0.016)
중기업×3개월 전	0.025*** (0.010)	0.025** (0.012)	0.029 (0.018)	0.025*** (0.010)	0.025** (0.012)	0.029 (0.018)
중기업×2개월 전	0.025** (0.010)	0.024** (0.012)	0.031* (0.019)	0.025** (0.010)	0.024** (0.012)	0.031* (0.019)
중기업×1개월 전	0.031*** (0.011)	0.034*** (0.013)	0.027 (0.019)	0.031*** (0.011)	0.034*** (0.013)	0.027 (0.019)
중기업×제도 변화 시점	0.017 (0.011)	0.014 (0.013)	0.029 (0.019)	0.058** (0.023)	0.066** (0.030)	0.047 (0.033)
중기업×1개월 후	0.029** (0.013)	0.026 (0.017)	0.039* (0.021)	0.059** (0.024)	0.071** (0.032)	0.040 (0.032)
중기업×2개월 후	0.045** (0.021)	0.054* (0.029)	0.029 (0.022)	0.042** (0.017)	0.046** (0.021)	0.042 (0.031)
중기업×3개월 후	0.036* (0.019)	0.043* (0.026)	0.027 (0.021)	0.042** (0.017)	0.047** (0.021)	0.040 (0.030)
중기업×4개월 후	0.052** (0.021)	0.064** (0.029)	0.032 (0.021)	0.053** (0.024)	0.061* (0.032)	0.045 (0.032)
중기업×5개월 후	0.023* (0.012)	0.020 (0.014)	0.034 (0.022)	0.047** (0.022)	0.062** (0.028)	0.026 (0.031)
중기업×6개월 이후 전체	0.043** (0.018)	0.057** (0.023)	0.024 (0.028)	0.042* (0.024)	0.055* (0.031)	0.022 (0.034)
ln(매출액)	0.154*** (0.017)	0.143*** (0.019)	0.156*** (0.031)	0.164*** (0.021)	0.148*** (0.023)	0.173*** (0.040)
ln(자산)	0.228*** (0.018)	0.221*** (0.021)	0.246*** (0.039)	0.279*** (0.025)	0.276*** (0.028)	0.285*** (0.056)
상수	-2.654*** (0.356)	-2.172*** (0.383)	-3.426*** (0.716)	-3.698*** (0.430)	-3.214*** (0.454)	-4.390*** (0.885)
관측치	83,952	60,732	23,220	59,968	40,488	15,480
기업 수	2,332	1,687	645	2,332	1,687	645
결정계수(R ²)	0.185	0.147	0.287	0.238	0.195	0.347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전체 고용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 또한
조세특례의 확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2018년 조세특례의 변화가 청년고용의 변화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지만, 그 결과는 전체 고용에 대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치집단과 처치기간의 교차항에 대한 대부분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7~2018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한편, 표본을 도소매업에 한정하는 경우 2017년의 제도 변화가 중견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견기업과 대기를 비교한 분석의 경우 중견기업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의 교차항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중소기업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의 교차항이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두 분석 모두 도소매업에 한정된 표본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 2017년 이후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수준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소매업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조세특례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7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특례의 확대가 청년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한 분석에서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가 폭이 더 크게 추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의 민감도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소매업에 한정하여 중견기업과 대기를 비교할 경우 2017년 조세특례의 확대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민감도 분석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는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강건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고용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 또한 기업의 규모와 경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의 대부분의 회귀분석에서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청년고용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체 고용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의 매출액에 대한 탄력성이 중견기업과 대기업 표본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표본에서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서 청년고용이 매출액의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또한 <표 9>와 <표 11>을 비교하면 모든 회귀분석에서 전체 고용보다 청년고용의 매출액에 탄력성이 더

<표 12> 청년고용 증대효과(기본 분석)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집단: 중견기업, 통제집단: 대기업>						
중견기업×2018년 이후	0.020 (0.025)	0.030 (0.036)	0.046 (0.031)	0.026 (0.045)	-0.022 (0.041)	0.057 (0.055)
중견기업×2017년 이후	0.015 (0.025)		-0.017 (0.031)		0.087** (0.039)	
2018년 이후	-0.031 (0.024)	0.142*** (0.031)	-0.057* (0.034)	0.097** (0.041)	0.021 (0.026)	0.245*** (0.046)
2017년 이후	0.186*** (0.026)		0.164*** (0.036)		0.236*** (0.032)	
ln(매출액)	0.247*** (0.064)	0.324*** (0.080)	0.255*** (0.079)	0.356*** (0.092)	0.202* (0.110)	0.216 (0.152)
ln(자산)	0.251*** (0.081)	0.250** (0.099)	0.234* (0.124)	0.192 (0.151)	0.237** (0.101)	0.297** (0.120)
상수	-6.104*** (1.342)	-7.602*** (1.524)	-5.933*** (2.067)	-7.097*** (2.328)	-4.940*** (1.774)	-6.354*** (2.059)
관측치	20,634	13,755	13,597	9,077	7,037	4,678
기업 수	578	578	381	381	197	197
결정계수(R ²)	0.063	0.077	0.041	0.050	0.193	0.223
<처치집단: 중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2018년 이후	-0.004 (0.021)	0.005 (0.031)	0.001 (0.025)	0.040 (0.038)	-0.019 (0.037)	-0.072 (0.052)
중기업×2017년 이후	0.007 (0.021)		0.040 (0.025)		-0.062* (0.037)	
2018년 이후	-0.034 (0.021)	0.154*** (0.031)	-0.044* (0.025)	0.094** (0.038)	-0.007 (0.036)	0.296*** (0.053)
2017년 이후	0.208*** (0.022)		0.155*** (0.026)		0.330*** (0.038)	
ln(매출액)	0.357*** (0.036)	0.441*** (0.047)	0.359*** (0.039)	0.443*** (0.050)	0.345*** (0.084)	0.425*** (0.119)
ln(자산)	0.185*** (0.037)	0.207*** (0.047)	0.200*** (0.045)	0.228*** (0.054)	0.160** (0.068)	0.179** (0.090)
상수	-7.248*** (0.648)	-9.087*** (0.794)	-7.446*** (0.746)	-9.373*** (0.865)	-6.887*** (1.249)	-8.584*** (1.623)
관측치	80,037	53,364	58,019	38,662	22,018	14,702
기업 수	2,309	2,306	1,674	1,671	635	635
결정계수(R ²)	0.096	0.123	0.089	0.114	0.118	0.148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기본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종합하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강건한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력직 근로자보다 청년 근로자의 고용이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민감도 분석

본고에서는 조세특례를 통한 세제혜택 신청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고용인원이 5인 이상 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1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본 선택의 기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기본 분석에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에서는 고용 여력이 보다 더 큰 기업들로 표본을 축소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 이익은 기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10억원 이상이면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들로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두 번째, 고용인원은 기본 분석과 동일한 5인 이상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기업들로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민감도 분석결과 조세특례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표본을 축소하더라도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기본 분석의 결과가 민감도 분석에서도 유지되었다. 중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하는 표본에서 조세특례 확대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전체 업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면, 2017년의 제도 변화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기본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행추세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조세특례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도소매업의 경우 조세특례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분석에서의 결과가 민감도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본 분석에서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민감도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유지되지만, 반대로 기본 분석에서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강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기본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종합하면 일자리

<표 13> 전체 고용증대 효과(100인 이상 기업)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집단: 중견기업, 통제집단: 대기업>						
중견기업×2018년 이후	-0.005 (0.010)	-0.010 (0.015)	-0.001 (0.011)	-0.002 (0.015)	0.007 (0.022)	0.009 (0.032)
중견기업×2017년 이후	-0.003 (0.009)		0.002 (0.010)		0.003 (0.018)	
2018년 이후	0.018** (0.009)	0.050*** (0.015)	0.008 (0.011)	0.026 (0.018)	0.038*** (0.011)	0.096*** (0.024)
2017년 이후	0.038*** (0.011)		0.023 (0.014)		0.070*** (0.018)	
ln(매출액)	0.138*** (0.030)	0.159*** (0.037)	0.115*** (0.028)	0.121*** (0.034)	0.193* (0.099)	0.243** (0.122)
ln(자산)	0.124*** (0.033)	0.159*** (0.042)	0.124*** (0.043)	0.168*** (0.054)	0.101* (0.059)	0.127* (0.076)
상수	0.887 (0.712)	-0.220 (0.839)	1.362 (0.826)	0.371 (0.955)	0.207 (1.657)	-1.308 (2.040)
관측치	14,724	9,816	10,404	6,936	4,320	2,880
기업 수	409	409	289	289	120	120
결정계수(R ²)	0.092	0.126	0.051	0.073	0.298	0.358
<처치집단: 중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2018년 이후	-0.004 (0.009)	0.020 (0.013)	0.005 (0.010)	0.035*** (0.014)	-0.045* (0.025)	-0.038 (0.034)
중기업×2017년 이후	0.022** (0.008)		0.027*** (0.009)		0.005 (0.025)	
2018년 이후	0.006 (0.009)	0.033** (0.014)	-0.004 (0.010)	0.020 (0.014)	0.036 (0.024)	0.053 (0.033)
2017년 이후	0.035*** (0.010)		0.031*** (0.011)		0.042* (0.022)	
ln(매출액)	0.207*** (0.030)	0.251*** (0.039)	0.190*** (0.031)	0.231*** (0.040)	0.422*** (0.084)	0.516*** (0.099)
ln(자산)	0.082*** (0.029)	0.091** (0.037)	0.079*** (0.030)	0.083** (0.037)	0.090 (0.091)	0.142 (0.101)
상수	0.005 (0.569)	-0.947 (0.671)	0.367 (0.577)	-0.445 (0.678)	-4.053** (1.839)	-6.705*** (1.815)
관측치	17,820	11,880	15,732	10,488	2,088	1,392
기업 수	495	495	437	437	58	58
결정계수(R ²)	0.210	0.260	0.196	0.241	0.369	0.479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4> 청년고용 증대효과(100인 이상 기업)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집단: 중견기업, 통제집단: 대기업>						
중견기업×2018년 이후	0.009 (0.025)	0.038 (0.035)	0.017 (0.027)	0.043 (0.041)	0.039 (0.058)	0.100 (0.071)
중견기업×2017년 이후	0.032 (0.022)		0.032 (0.025)		0.062 (0.052)	
2018년 이후	-0.034* (0.018)	0.097*** (0.030)	-0.062*** (0.022)	0.048 (0.038)	0.022 (0.032)	0.201*** (0.048)
2017년 이후	0.147*** (0.022)		0.123*** (0.027)		0.202*** (0.031)	
ln(매출액)	0.388*** (0.063)	0.455*** (0.078)	0.361*** (0.073)	0.414*** (0.095)	0.426*** (0.119)	0.519*** (0.142)
ln(자산)	0.212** (0.087)	0.273** (0.107)	0.230* (0.119)	0.296** (0.150)	0.148 (0.116)	0.201 (0.145)
상수	-7.661*** (1.764)	-10.183*** (2.063)	-7.532*** (2.121)	-9.879*** (2.472)	-7.020** (3.253)	-9.909** (3.860)
관측치	14,719	9,816	10,404	6,936	4,315	2,880
기업 수	409	409	289	289	120	120
결정계수(R ²)	0.116	0.140	0.097	0.116	0.231	0.286
<처치집단: 중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2018년 이후	-0.037 (0.023)	-0.024 (0.033)	-0.011 (0.025)	0.017 (0.036)	-0.167*** (0.060)	-0.244*** (0.082)
중기업×2017년 이후	0.008 (0.022)		0.023 (0.023)		-0.079 (0.059)	
2018년 이후	-0.014 (0.021)	0.155*** (0.034)	-0.035 (0.023)	0.121*** (0.036)	0.060 (0.057)	0.262*** (0.085)
2017년 이후	0.181*** (0.024)		0.169*** (0.025)		0.220*** (0.064)	
ln(매출액)	0.349*** (0.049)	0.417*** (0.065)	0.334*** (0.051)	0.399*** (0.067)	0.529*** (0.178)	0.609** (0.234)
ln(자산)	0.136** (0.062)	0.148* (0.078)	0.128* (0.068)	0.144* (0.085)	0.242* (0.132)	0.274 (0.176)
상수	-5.337*** (1.166)	-6.775*** (1.361)	-4.921*** (1.247)	-6.388*** (1.457)	-10.414*** (3.145)	-12.450*** (3.635)
관측치	17,812	11,872	15,732	10,488	2,080	1,384
기업 수	495	495	437	437	58	58
결정계수(R ²)	0.129	0.141	0.120	0.132	0.280	0.311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5> 전체 고용증대 효과(이익 50억원 이상 기업)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집단: 중견기업, 통제집단: 대기업>						
중견기업×2018년 이후	-0.016 (0.018)	-0.040 (0.026)	-0.012 (0.021)	-0.040 (0.030)	-0.006 (0.028)	-0.004 (0.048)
중견기업×2017년 이후	-0.020 (0.020)		-0.025 (0.025)		0.006 (0.028)	
2018년 이후	0.005 (0.021)	0.043** (0.022)	-0.012 (0.029)	0.005 (0.026)	0.048*** (0.015)	0.149*** (0.035)
2017년 이후	0.047** (0.022)		0.025 (0.028)		0.108*** (0.026)	
ln(매출액)	0.087* (0.047)	0.113* (0.064)	0.091* (0.048)	0.126* (0.068)	0.055 (0.103)	0.064 (0.126)
ln(자산)	0.204*** (0.053)	0.241*** (0.070)	0.219*** (0.071)	0.249*** (0.089)	0.128* (0.073)	0.161 (0.103)
상수	-0.056 (0.913)	-1.305 (1.064)	-0.429 (1.117)	-1.709 (1.275)	2.026 (1.622)	1.195 (1.908)
관측치	14,220	9,480	10,260	6,840	3,960	2,640
기업 수	395	395	285	285	110	110
결정계수(R ²)	0.033	0.050	0.018	0.028	0.253	0.290
<처치집단: 중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2018년 이후	0.014 (0.017)	0.060** (0.027)	0.028 (0.020)	0.085*** (0.030)	-0.049 (0.053)	-0.041 (0.088)
중기업×2017년 이후	0.038* (0.020)		0.051** (0.024)		-0.006 (0.038)	
2018년 이후	-0.026 (0.019)	0.005 (0.033)	-0.045** (0.022)	-0.028 (0.038)	0.061** (0.029)	0.148** (0.055)
2017년 이후	0.043** (0.022)		0.028 (0.025)		0.100** (0.043)	
ln(매출액)	0.236*** (0.049)	0.308*** (0.055)	0.254*** (0.050)	0.321*** (0.056)	0.117 (0.130)	0.193 (0.160)
ln(자산)	0.129*** (0.047)	0.107** (0.054)	0.133** (0.052)	0.116** (0.059)	0.153 (0.129)	0.112 (0.158)
상수	-1.858** (0.916)	-2.750*** (0.992)	-2.196** (0.942)	-3.117*** (1.040)	-0.342 (1.996)	-1.018 (2.204)
관측치	10,944	7,296	9,108	6,072	1,836	1,224
기업 수	304	304	253	253	51	51
결정계수(R ²)	0.077	0.109	0.065	0.094	0.250	0.283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16> 청년고용 증대효과(이익 50억원 이상 기업)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처치집단: 중견기업, 통제집단: 대기업>						
중견기업×2018년 이후	-0.009 (0.031)	-0.027 (0.046)	-0.009 (0.036)	-0.035 (0.054)	0.014 (0.061)	0.043 (0.086)
중견기업×2017년 이후	-0.011 (0.033)		-0.020 (0.039)		0.033 (0.063)	
2018년 이후	-0.051 (0.032)	0.137*** (0.043)	-0.070 (0.043)	0.096* (0.053)	-0.000 (0.031)	0.253*** (0.067)
2017년 이후	0.205*** (0.034)		0.185*** (0.045)		0.261*** (0.044)	
ln(매출액)	0.252** (0.099)	0.351*** (0.125)	0.241** (0.113)	0.386*** (0.141)	0.249 (0.192)	0.249 (0.233)
ln(자산)	0.329*** (0.113)	0.335** (0.143)	0.358** (0.153)	0.334* (0.189)	0.207 (0.142)	0.252 (0.194)
상수	-7.653*** (2.125)	-9.759*** (2.495)	-8.150*** (2.469)	-10.562*** (2.861)	-4.909 (3.990)	-5.775 (4.696)
관측치	14,107	9,412	10,158	6,783	3,949	2,629
기업 수	394	394	284	284	110	110
결정계수(R ²)	0.053	0.064	0.038	0.050	0.202	0.208
<처치집단: 중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2018년 이후	-0.006 (0.032)	0.027 (0.050)	0.005 (0.034)	0.065 (0.054)	-0.015 (0.110)	-0.110 (0.155)
중기업×2017년 이후	0.019 (0.033)		0.047 (0.036)		-0.095 (0.088)	
2018년 이후	-0.052* (0.029)	0.150*** (0.049)	-0.079** (0.033)	0.093* (0.055)	0.061 (0.066)	0.393*** (0.100)
2017년 이후	0.220*** (0.035)		0.194*** (0.038)		0.328*** (0.078)	
ln(매출액)	0.322*** (0.109)	0.445*** (0.121)	0.325*** (0.116)	0.470*** (0.122)	0.265 (0.287)	0.243 (0.392)
ln(자산)	0.197* (0.106)	0.147 (0.123)	0.199* (0.117)	0.154 (0.136)	0.161 (0.260)	0.161 (0.336)
상수	-6.447*** (1.947)	-7.776*** (2.227)	-6.498*** (2.101)	-8.325*** (2.401)	-4.951 (4.431)	-4.533 (4.855)
관측치	10,854	7,239	9,045	6,030	1,809	1,209
기업 수	304	304	253	253	51	51
결정계수(R ²)	0.100	0.117	0.090	0.109	0.184	0.204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의 의미
 2. 시간더미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생략
 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험자 수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강건한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V. 결론

2017~2018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본고는 2017~2018년 조세특례제도의 변화시점을 이용하여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정보를 연결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조세특례가 일자리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하였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은 주로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과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특례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의 경우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세제지원은 기업의 고용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를 통한 세액공제 감면액은 최저한세 등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고용인원을 증가시켰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쉽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비용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고용지원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은 고용증대 효과 없이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없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에 사후적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발생하는 사중손실이므로 그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는 기업이 2017~2018년 확대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바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조세특례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로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과
기업이 2017~2018년
확대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바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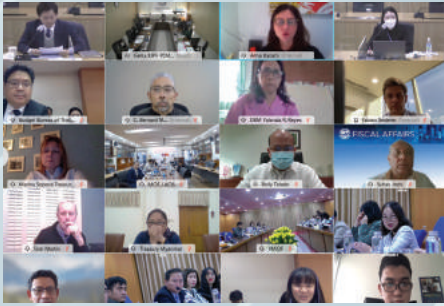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정책을 위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도 있다. 이 경우 실제로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기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세제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고용을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한다. 어떠한 기업이라도 고용인원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고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다. 즉, 각 기업마다 수용 가능한 최대 인력이 존재하는데,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이 향후에도 지속되고 그 지원규모가 최소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면 당장 무리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규모를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세제를 전반적으로 고용 친화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기변동 상황에서 불경기의 고용 수축을 최소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불경기에 한하여 공제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업들에 불경기가 지나면 공제규모가 다시 이전 상태로 축소된다는 기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경기에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확대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에 반응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그 원인에 따라 정책을 위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고려하지 못한 서비스업 종 등 보다 다양한 업종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전병목·김학수·오종현(2018)과 같이 분석 대상 기업을 매우 협소하면서 유사하게 정의할 경우 그 효과가 관찰될 가능성도 있고, 업종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기업의 업력을 고려할 경우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IPF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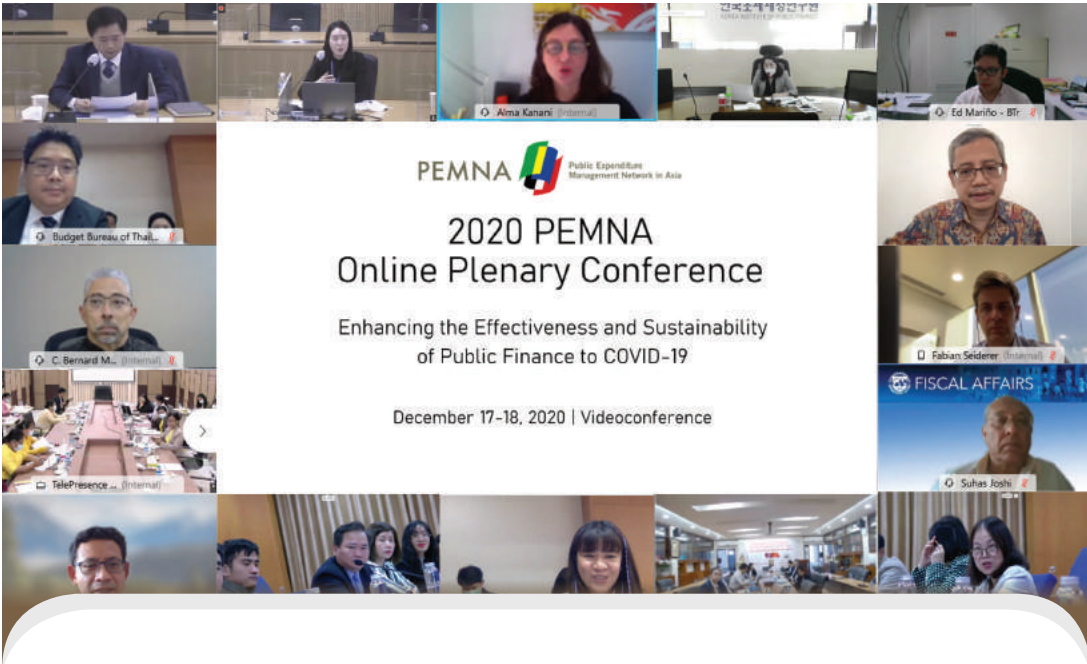
- 김문정·오종현·조원기, 『조세·재정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9.
- _____,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9.
- _____,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0. 9.
- 오종현,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Research Brief, No.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2019. 9.
- 전병목·김학수·오종현,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생산성, 투자, 고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8-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정책토론포트 |



■ 2020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2020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개요

- 주 제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to COVID-19
-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8일(금)
- 주 최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 본 원고는 2020년 12월 17일(목)과 12월 18일(금),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하에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to COVID-19」를 주제로 열린 2020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요약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국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IMF, OECD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제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2020년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별 재정정책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계획에 대해 심층 논의함

- 총회는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첫째 날은 공통 세션으로, 둘째 날은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로 나누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함

공통세션

12월 17일 목요일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I

• Alma Kanani (The World Bank)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Alma Kanani(세계은행, Practice Manager)는 이번 온라인 총회는 회원국들이 2020년 하반기에 펼친 정책적 대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재정 관리의 역할과 함께 투명성, 신뢰성, 시민참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Opening Remarks II

• Kyoung-ho H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각국의 재정관리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논의하는 이번 온라인 총회는 시의적절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함



Joint Session 1. Fiscal Adaptation to COVID-19

Presentation

• Soon-young Kw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한국은 낮은 확진자 수를 유지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2020년 4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성장률은 2분기 들어 -2%대로 급락한 이후 3분기 들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2020년 예산인 5,120억달러의 약 30%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으며, 총 4차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산업별·부문별 맞춤형정책을 실시하였음
- 한국의 추경안은 매우 높은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차 추경안(이행률 85%)을 제외한 모든 추경안의 이행률은 97~99%대에 이르렀으며, GDP 성장률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2021년 예산안의 네 가지 우선순위는 2020년 추경안의 우선순위와 흡사한 사회보장, 보

건 및 환경, 경제회복, 미래산업 투자이며, 부채율 증가 및 예산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 중임

Presentation

• Pongpim Chaisiri (Budget Bureau, Thailand)

- 태국의 코로나19 정부 대응책은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집중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정책을 시행하였음
 - 첫 번째 단계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었으며, 금융지원, 과세이연 등을 포함한 세금부문의 조치, 임금보조 및 보건물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음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세금정책,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밝힘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보건부문 정책 및 현금지급,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국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텔이나 티켓을 지원하는 등 국내여행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음
- 태국은 2020년 4월 지출을 줄이고 예산 재배정을 통해 고용 증가와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할애(2020년 4월 승인)
 - 미지출 상태 경상지출을 10% 줄이는 대신 고용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업 및 상공인 조달부문을 늘리는 한편, 미지출 상태의 항목별 100만 태국바트 이하 자본지출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및 가뭄에 대비한 물품과 시설에 지원

- FY2020 예산지출이전법: 미집행 상태의 2020년도 예산을 중앙기금으로 이전한 후 코로나19 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 긴급사항 대응에 배정 (총 884억 5,200만태국바트)
- FY2021-22 예산: 재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중앙기금에 403억 2,500만태국바트를 할애하였으며,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다고 밝힘

Presentation

• Chung Van Vu (Vietnam)

- 베트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세, 지대 및 각종 요금을 경감시키는 정책과 사회보장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GDP 성장률 2~3%대를 달성하고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둠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지대, 특별소비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기함(86억달러)
 - 법인세, 소득세, 환경보호세, 관세 등을 경감시킴(22억달러)
 -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 사회경제적 성장, 지속적인 재정·통화 정책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30억달러)
 - 베트남의 3사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3.62%를 기록
-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성장 및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예산

을 편성함

-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각종 요금의 경감을 고려하는 한편, 수익에 기반한 과세 및 요금 산정을 고려하고 있음
- 보건부문 예산안은 백신, 의료장비, 의료종사자 지원 등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음

Discussions

- IMF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그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각국은 주로 정책 이행률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GDP 성장률과 이행률을 지표로 삼아 모든 부처가 매달 이행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책 이행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태국 역시 이행률을 측정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밝힘
 - 베트남은 정책 대상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원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지출을 축소·연기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2019년도 정부수입이 크게 증가해 이를 2020년으로 이월한 덕에 재정적자가 크지 않았다고 밝힘



- 코로나19 대응 경기회복책에 기후변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계은행의 질문에 각국은 관련 정책내용을 공유하였음
 - 한국의 경우 한국형 뉴딜에 기후변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저탄소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및 재해방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요인을 없애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힘

Joint Session 2. Balanc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Short-Term Stimulus

Presentation

- Ergus Islamaj (The World Bank)

- 세계은행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동향 보고서 *From Containment to Recovery: Economic Updat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October 2020*에 기반하여 아태 주요국들의 코로나19 재정 대응방안을 공유하였음
 - 성장률 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경향을 보이나 국가별 편차가 크며, 역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GDP 성장률이 가장 크고 베트남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확진자 수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 비롯하여 필리핀과 미얀마 등지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가계수입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국가들이 기업 및 가계 지원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과 부채가 증가하여 재원조달이 각국의 큰 관심사가 됨

- 코로나19는 투자, 인적자본, 생산성에 타격을 주어 경제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개편, 사회보장 정책 확대, 기업지원,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정책 여건 확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한편, 누진세를 도입하고 직접세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함

Presentation

- Eduardo Anthony G. Mariño III (Bureau of the Treasury,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상충관계에 및 재정정책 시행의 제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음
 - 필리핀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재정적 상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부채율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의 부채율 감소가 모두 상쇄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을 늘리고자 할 때 자금조달 방식, 재정적 지속가능성, 법률 및 규제체계라는 제약이 존재함

- 필리핀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직접 지원, 통화 정책 조정, 시장 유동성 조정을 통해 자금조달의 제약점을 극복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 지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늘 관건이 되어 왔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 수준을 가늠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필리핀의 1987년 헌법 제24조 제4항에서 특별세출은 목적을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입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제약으로 언급되었음

Country Updates

- Nguyen Thi Ngoc Hieu (Vietnam)
- Rofyanto Kurniawan (Indonesia)
- San San Oo (Myanmar)

- 베트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5~3%대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GDP 성장률을 이룩했으며 정부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기존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정부수입은 12.5% 감소하였으며 재정적자 폭은 증가함
 -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이자율을 인하하여 유동성을 늘렸음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확장정책을 시행하였음
 -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채율을 규정하는 법안을 수정하여 가능한 정부부채의 폭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695.2조루피아를 투입

- 이와 같은 확장정책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사분기 -5.32%에서 3사분기 -3.49%로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힘

- 미얀마는 2020년 4월 27일 도입한 경제충격 완화 계획(COVID-19 Economic Relief Plan: CERP)을 소개하고 재원 마련 방안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음
 - 미얀마는 경제회복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자율을 인하하고 2천억미안마 짜 규모의 코로나19 대응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현금·현물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음
 - 2020년 예산의 재배정, 양허성 차관, 기존 대출의 구조조정, 기부금을 통한 기금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Results of the PEMNA COVID-19 Survey

- Kyoungsun Heo
(PEMNA Secretariat, KIPF)

- PEMNA 사무국은 2020년 5월에 실시하였던 코로나19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완하여 후속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응답(7개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하였음
 - PEMNA 회원국들은 GDP 성장률의 저하, 인플레이션율의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겪는 한편, 관광산업과 항공산업 부문의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PEMNA 회원국들이 정부수입 감소,



지출 증가, 부채율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효과는 있었지만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힘

-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밝혔으며 이밖에도 보건, 고용, 교육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Discussions

- 팬데믹 상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출 및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음
 - 한국은 부채율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필리핀은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배당금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세계은행은 보조금 마감기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배분뿐 아니라 모니터링과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예산분과

12월 18일 금요일

Opening Session

Welcome and Recap of Day 1

- 예산분과 간사 Bernard Myers(세계은행)는 Day 2 분과별 심층논의에서 다룰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함
 - Day 2에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들이 그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함
 - 특히 각 국가의 예산당국이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자 함
 - 또한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예산 집행과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함

B-CoP Session 1. Monitoring and Reporting on the Uses and Impact of COVID-Spending

Presentation: Enhancing Budget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Indonesia

- Arun Arya (The World Bank)

- 인도네시아는 예산투명성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반면, 시민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국제 예산파트너십)의 2019년 예산공개조사(Open Budget Survey: OBS) 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예산투명성은 70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18위(1위 뉴질랜드: 87점, 10위 필리핀: 76점)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의 시민참여 점수는 20점으로 국제 평균인 14점보다는 높지만 기준 점수인 61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임
- 인도네시아는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인 SPAN (Sistem Perbendaharaan dan Anggaran Negara)을 도입하여 예산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SPAN을 통해 모든 정부 수입과 지출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실시간 관리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음
 - SPAN에 기록된 재정정보는 공무원들이 필요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OM-SPAN을 통해 모바일로도 제공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코로나19 관련 예산정보를 대중에게 간편한 포맷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앱을 통해 코로나19 예산과 정부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지역별, 계약종류별, 규모별로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음

Country Updates

- Soon-young Kwon (Korea)
- Mohd Zahrain Mohd Nor (Malaysia)
- San San Oo (Myanmar)
- Kim Robert C. De Leon (The Philippines)

-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자 예산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관리하고 있음
 -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dBrain으로 모든 재정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산정보를 제공함
 - 최근 한국의 추경은 모두 코로나19 대응 관련이었으며, 각 세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집중 관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부가 최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였는데, 이러한 디지털 지급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였음
 - 정부는 정부정책 수혜가 필요한 대상을 유사성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각 그룹에 얼마의 지원금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관리하고 있음
 - 또한 투명성을 위해 매달 추경의 규모와, 각 그룹이 제공받고 있는 규모, 그리고 그 영향을 공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LAKSANA(Economic Stimulus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Unit Between National Agencies)와 협력하여 디지털 대시보드(Digital Dashboard)를 개발하였음
- LAKSANA는 53개의 부처들과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정확한 재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정부는 LAKSANA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각 지역과 각 수혜그룹에 제공되는 지원의 규모와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예산지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음

■ 미얀마는 CERP(COVID-19 Economic Relief Plan)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을 구성하여 정부지출을 관리하고 있음

- 2020년 4월 27일에 도입된 CERP는 7개의 목표, 10개의 전략, 36개의 계획, 그리고 78개의 실행 방안을 담고 있음
- 이자율 감면, 조세감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대출 확대, 현금 및 현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코로나19 극복 대응책을 마련함
- CERP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2020년도 예산을 재배정하고, 추경과 예비비를

활용하였으며, ODA와 같은 대외 원조를 확대하고, 기존 부채를 재구성하였고, 채권 만기를 연장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지출에 대한 감독과 보고를 위해 CERP 감독위원회(CERP Monito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 의해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이 관리 및 평가되고 있음

■ 필리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관련 비상법안을 통과시키고, 모든 정부지출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빠르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필리핀 의회는 정부가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상대책 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19 피해계층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함
- 정부는 예산지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중에게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정부 행정 데이터 검토와 현장 설문을 활용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현금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 보조금과 훈련을 통해 등록된 근로자와 사업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저리대출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Cash for Work를 통해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여러 국가 공사를 진행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업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정책의 효과와 정부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전화 또는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가구들의 피해 및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Discussions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의 감독 및 보고는 국가들이 시행하는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법안이 통과되어 이를 기반으로 많은 현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LAKSANA가 수혜 대상 그룹에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필리핀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교통 분야가 받은 타격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가 고용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한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부처에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B-CoP Session 2. Expenditure Reforms

Presentation: Redesigning the Budget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Agung Hidayat Purwanto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함
 - 인도네시아의 예산은 재정준칙으로 지출 증가에 대한 경직성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 PERPPU No. 1/2020을 도입하여 현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다음으로 GDP 대비 4.2% 규모의 경제부응책인 PEN 사업을 실시하여 보건, 사회안전 등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 지원, 지방정부 및 피해 업종 지원 등을 진행함
 -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정부예산(Perpres 54/2020과 Perpres 72.2020)을 수정하여 정부적자를 GDP 대비 6.34%까지 확대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확대함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예산제도 개혁을 실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



고, 정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건, 교육, 기술, 인프라, 식품, 관광 및 사회보호 분야에 대한 지출에 집중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효과적으로 예산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예산제도 개혁의 목적은 예산기획과 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성과주의 예산을 강화하며, 예산문서의 정보를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제도 개혁을 통해 각 사업의 결과와 효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사업을 방지하며, IT 연계와 조직구성을 향상하고, 정부정책 목표와 정부사업을 더욱 잘 연결시키고자 함
- 또한, 예산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사업을 재정비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됨

Presentatio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Covid-19 Recovering for Lao PDR

• Phoukham Soulat (Ministry of Finance, Lao PDR)

- 라오스의 제9차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2021~2025)에 의하면 5년 후 라오스의 정부수입은 GDP 대비 최소 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해 전년 대비 10~13%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최신 예산제도와 국고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들을 정부수입관리제도, 은행시스템, 그리고 예산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입 및 정부수입 관리를 위한 은행시스템 개발과 도로세 및 토지세 징수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banking 채널 개발이 필요함
- 재정관리정보시스템(FMIS)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출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 라오스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구상하고 있음

- 중기적으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피해 가구와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및 사회적 회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

■ 라오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회복을 위해 2020년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정 배정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 또한 수입을 증액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Country Updates

- Afizal Kasa (Malaysia)
- Ganokporn Soisuwan (Thailand)

- 말레이시아는 2020년 12월 15일에 2021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제12차 국가계획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임
 - 예산당국은 예산 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독을 통해 일선 부처에서 지출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리할 것임
- 태국은 예산법(Budgetary Procedures Act)을 통해 세입 및 지출에 대한 감독과 평가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법안의 Section 46과 47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도입하는 것과 일선 부처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 도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Section 48에서는 평가방법, 정책목표 달성 실패 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음

Discussions

-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된 정부예산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계획도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음
 - 한국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을 위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정부정책과 관련된 예산 배정, 그리고 백신 수요에 따른 예산 배정은 모두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될 예정임
 - 베트남은 해외 출장, 워크숍 등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백신의 대량 생산 및 보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와 중국에서 백신을 수입할 예산과, 백신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예정임. 베트남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제공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관련 시행령으로 인해 일선 부처들의 미집행 예산에 대해 해당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COVID Fund Act를 기반으로 백신 생산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백신을 제공할 예정임

국고회계분과

12월 18일 금요일

Opening Session

Welcome and Recap of Day 1

- 국고회계분과 간사 Fabian Seiderer(The World Bank)는 국고회계분과 세션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재정 대응 중, 특히 국고 및 회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설명함
 - 국고회계분과는 2개 세션으로 세션별 3개의 발표로 구성됨
 - 첫 세션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중 국고국



의 역할을 재정정보시스템, 계정과목표 등 회계 시스템, 관련 재무보고서 등에서 살핌

- 두 번째 세션은 코로나19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친 여파가 큰 상황에서 국고국 운영 및 현금·부채 운용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

T-CoP Session 1. Monitoring and Reporting on the Uses and Impact of COVID-Spending

Presentation

• Mark Silins (PEMPAL)

- 정부의 재무보고서에 대해 신속성, 정확성, 종합성 등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보고서도 긴급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 PEMPAL*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해 왔음

* PEMPAL(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Peer Assisted Learning)은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공지출관리 관련 협의체임

- 각국의 사례는 재정정보시스템(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에서 코로나19 관련 내역을 분리하여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

- 계정과목표 관리에 대한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체계의 기능과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및 일선 부처의 보고서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 관리해야 함

- 재정정보시스템 및 계정과목표는 매년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기에 유연하지 않음. 따라서 일회성 또는 신규 사항에 대한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장 큰 과제는 기존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임. 이는 기존 계정과목표 부문(segment)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 특히 어려움

- 통합 계정과목표(United Chart of Accounts: UCoA)는 상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통합 계정과목표의 각 부문은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 차원의 기금과 예산 및 예산외 등을 최대한 포함해야 하며 자본예산도 포함해야 함
- 통합 계정과목표를 설계하더라도 포함하지 못한 정보들은 신규 부문으로 ‘범분야 사안(cross cutting issues)’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함
- 공공재정관리 포털(PFM Portal)을 통해 지출부서와 재무부를 비롯하여 전자조달, 재정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통합 관리해야 함

Presentation

• Wiwin Istanti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도 신규 정책들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

- 보건, 사회보호, 지방정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업 금융, 비즈니스 인센티브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 정확하게 집행함
- 재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정부 내 감독과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 경제 회복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
-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에 대한 책임과 유연성을 제고 하고자 규정(No 185/PMK.02/2020)을 마련함

■ 코로나19 상황을 계정과목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부문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내역은 특별 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국고국과 일선 부처는 별도의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관리함

■ 정부 회계 기준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도 적용되며 재무제표상에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가 보건, 경제 및 금융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변화와 예산 재분배에 따른 예산과 재정지표의 변화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보건, 사회 안정망 및 경제 부양 관련 예산 재분배 내역

Presentation

- Mohd Sabree bin Yaakub (Accountant General's Department, Malaysia)

■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은 연방헌법에 의거하여 통합 기금 계정을 수입, 용자, 신탁으로 분류하여 별

도 운영하고, 각 계정별로 은행계좌를 운영함

- 통합 수입 계정에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연방 수입,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의무 지출(charged expenditure)과 공급 지출(supply expenditure)로 나뉨
- 통합 용자(Loan) 계정은 재무부 채권, 정부 이슬람 채권, 말레이시아 정부 증권 등의 국내 용자와 시장·양자간·다자간 대출을 포함한 외부 용자를 포함함
- 통합 신탁 계정에서 특히 정부 신탁기금 및 개발 신탁기금에는 통합 수입 계정 기여분이, 개발 신탁기금 및 코로나19 신탁기금에는 통합 용자 계정 이전분이 포함됨

■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신탁 계정 내 코로나19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지출을 재분배하였으며, 재무제표상에 예산과 실적치를 표기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 신탁 계정 내 코로나19 신탁기금은 정부의 관련 경기부양책에 사용될 예정이며 31개 세부사항에 할당될 예정임
-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경상예산(운영 지출) 및 관련 자본 예산(개발 지출)은 코로나19 신탁기금으로 재분류됨
- 재무제표 내 예산안과 실적치를 공개하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경상 및 자본 예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표기함

Country Updates

- Khin Soe Oo (Myanmar)
- Viengsone Phetsynouan (Lao PDR)



- 미얀마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면세, 저소득가구 현금지원, 대출지원 등의 재정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 흐름을 별도로 관리·기록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재원에는 WB, ADB, IMF, JICA에서 지원받은 기금이 포함됨
 - 코로나19 관련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예산 계정에 기록되고 있으며, 국고국은 일선 부처의 정보를 취합하여 코로나19 특별 재무제표를 준비 중임
 - 공공재정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 계정과목표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IMF와 WB가 함께 하는 중임

- 라오스 역시 통합 계정과목표를 개발하고 관련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Discussions

- Mark Silins(PEMPAL)는 계정과목표가 정부의 모든 운영 내역을 포괄해야 하며, 계정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는 국고국 및 일선 부처의 재정정보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나, 동일한 계정과목 기준을 채택하여 사용 중임
 - 국고국과 일선 부처 등 중앙정부의 모든 재무보고서에는 동일한 계정과목표가 사용됨
 -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체 계정과목표를 보유하고

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상이함. 그러나 회계 기준과 GFS 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계정과목표를 유사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미얀마는 이러한 부처별 통합 계정과목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임

- 코로나19 지출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연방정부에 한하여 매일 보고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2-3주의 시간이 소요됨
 - 말레이시아는 통합 기금 내 코로나19 관련 신규 기금을 신설하였기에 이에 한정된 예산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 일단위의 보고가 가능함. 단, 이는 연방정부(중앙정부)에 한하며, 아직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정보까지는 통합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계정과목표를 IT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다소 소요됨

- 필리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정과목표를 연동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현재 지방정부에 계정과목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합했을 시 유사해지도록 노력 중임
 - 부채 모니터링 시스템이 통합 계정과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Mark Silins(PEMPAL)는, 통합과 연동의 문제는 특히 분절된 시스템을 보유한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설명함. 그러나 이미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수정이 어려운 반면, 통합화를 처음 시도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설계하면 이후의 관리는 수월할 수 있다 발언함

T-CoP Session 2. Developing More Resilient and Agile Treasury Systems

Presentation

- Cem Dener (The World Bank)
- Ki-young Lee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Korea)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각국의 재무시스템은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성을 갖추도록 발전함
- GovTech는 아날로그 정부-전자 정부-디지털 정부에 이은 최신 정부 형태로 많은 국가들이 개발 준비 중에 있음
 - GovTech은 공공부문 현대화 중 ① 전체 정부 차원의 디지털 혁신, ②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민 중심 서비스, ③ 간단하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강조함
 - GovTech의 중점 분야는 4개로 각각 ①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② 주요 정부 시스템 운영, ③ 시민 참여 주류화, ④ GovTech Enablers임
- 일레로 북 마케도니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WB의 지원하에 비상사태 대응 구성요소 (Contingent Emergency Response Component: CERC)를 구축함
 - 기존의 WB 시스템을 활용하여 2개월 내 e-tax, 급여 지급, 결산 보고가 가능하게 됨
- 두 번째 국가 사례는 한국의 dBrain으로 한국재정

정보원에서 직접 발표함

- 코로나19 발발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여 근무지역 다각화와 재택근무 등의 조정을 빠르게 이루어 정부의 재정운용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함

Presentation

- Eduardo Anthony G. Mariño III (Bureau of the Treasury, The Philippines)

- 필리핀 국고국은 국고단일계정(Treasury Single Account: TSA) 운용과 더불어 현금 완충장치, 다양한 자원 조달방식, 유연성 강화 등을 고려함
- 2021년 필리핀의 국가채무 및 일반정부 부채는 각각 GDP 대비 58.1%와 51.2%로 전망되며, 용자는 국내 비율이 85%일 것으로 보임
 - 경제 회복에 따라 재정 통합 노력을 재개할 예정임
 -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재정적자 수준으로 복귀하면 중기 부채 전망에서의 하락 추세가 회복될 것임

Presentation

- Nguyen Thi Ngoc Hieu (Vietnam State Treasury, Vietnam)

- 코로나19로 베트남 정부는 전례 없는 부양책을 시행하여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이 변동될 것으로 예측됨
 - 기업 및 시민 대상 지원책으로 인해 2020년 정



부 수입은 12.5%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사회보호 및 구호 지출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 투자를 가속화함. 이는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2020년 정부지출은 예산안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코로나19 대응책을 지원하고자 베트남 국고국은 국채 발행 및 교환을 포함한 부채 관리를 진행 중임

- 2020년 초 3,090,900억베트남동(134.4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간 발행한 국채의 총량은 3,390,900억베트남동(147.4억달러)임
- 만기 조정을 포함한 일련의 노력 결과, 국채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2020년 12월 15일 기준)
 - 국채 총발행량: 2020년 당초 계획 목표의 100%, 개정 계획의 91%
 - 평균 국채발행 만기: 13.84년(2019년 13.44년)
 - 평균 국채발행 금리: 연 2.88%(2019년 연 4.51%)
 - 국채 포트폴리오의 평균 만기기간: 8.33년(2019년 말 7.42년)

■ 베트남은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현금관리 역량을 발전시키는 중임

- 코로나19는 정부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고,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함
- 연도별·분기별 현금흐름 예측과 더불어 10% 이상의 큰 변동은 월별 결과를 검토하며 관리함
- 또한 유휴 현금 잔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금관리와 통화정책 간 조율, 현금관리 IT 플랫폼 개

발 등의 노력을 기울임

- 그 결과 수입 감소 상황에서도 모든 지불 요청을 수행함.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관리·예산 관리·부채 관리 간 통합을 시도함

Discussions


■ Suhas Joshi(IMF)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함

- Cem Dener(WB)는 재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기술적인 기반이 있기에 위기 상황과 정상시기 간 전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봄. 그러나 이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거나 시스템이 미비한 국가의 경우 균형을 맞추기도, 정상시기로 복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설명함. 이후 회의에서는 관련한 모범 사례들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필리핀은 코로나19는 각국의 국고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한 용자 및 차입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한국의 dBrain은 모든 정부가 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베트남은 각국이 상이한 대응방안과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럼에도 모두의 목표는 같다는 것을

확인함. 바로 국민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부양한다는 것임

- 코로나19는 정부의 디지털화를 계획보다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베트남 내 100개 이상의 지출부서가 디지털화로 연동되었고 이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짐
- 국가별 현황 공유는 각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또 다른 위기 상황 대처에도 시사점을 줄 것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보고서 발표]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0년 12월 9일 미국 연방예산 적자 감축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함¹⁾

- 본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방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과세 관련 방안을 모색함

■ 의회예산국은 본 보고서에서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 5%의 연방 부가가치세를 도입함²⁾
 - 현재 주별로 최종 판매시점에 부과하는 판매세(sales tax)만 존재함
- 항목별 공제를 폐지함³⁾
 - 현재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고정된 금액의 표준공제나 주 및 지방세·대출이자·기부금·일부 의료비 등을 구분하여 공제를 받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상함⁴⁾

- 2026년부터 인상이 계획된 개인소득세 세율에 대해, 기존 안을 변경하여 과세소득 단계 전 구간 혹은 일부 구간에 대해 1%p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 제안함

- 증권 구매 및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함⁵⁾
- 1년 이상 장기보유 자본 이득 및 적격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2%p 인상함⁶⁾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캐나다 - 공정 과세 관련 경제성명서 발표]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0년 11월 30일 디지털 경제 및 종업원 스톡옵션과 관련한 공정과세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성명서인 Fall Economic Statement 2020을 발표함⁷⁾

■ 2021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거주 업체 및 유통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간소화된 GST/HST 및 송금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과세를 용이하게 함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1 to 2030," <https://www.cbo.gov/publication/56783>, 검색일자: 2020. 12. 17.

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mpose a 5 Percent Value-Added

3)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liminate Itemized Deduction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49>, 검색일자: 2020. 12. 23.

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ncreas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46>, 검색일자: 2020. 12. 23.

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mpose a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76>, 검색일자: 2020. 12. 23.

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aise the Tax Rates on Long-Term Capital Gains and Qualified Dividends by 2Percentage Point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47>, 검색일자: 2020. 12. 23.

7) News IBFD, "Canada - Canada Tackles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nd Employee Stock Options in Fall Economic Statement," December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2-02_ca_1 (accessed 17 Dec. 2020)

- 총 과세 공급액이 12개월 동안 3만캐나다달러⁸⁾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등록 요건이 적용됨
 - 캐나다 거주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 거래에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본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물류전문업체(fulfilment warehouse)⁹⁾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나, 플랫폼에 기반한 단기 숙박업소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제안함
- 중견기업에 고용된 고소득 개인의 스톡옵션에 대한 공제혜택을 연간 20만캐나다달러¹⁰⁾로 제한함
- 기존에는 근로자가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이를 통해 얻는 소득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무한 공제가 가능하였음
 -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스톡옵션 계약을 통해 개인소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불균형적인 혜택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함¹¹⁾
 - 2021년 6월 이후 근로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과 고용주에게 부여된 법인신탁 혹은 뮤추얼 펀드 신탁에 적용됨

- 캐나다 통제 민간기업(CCPC)이나 연간 총수익이 5억캐나다달러¹²⁾ 이하인 사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님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그리스 - 조세분쟁위원회 법원 외 조세분쟁 조정 기능 운영 결정]

- 그리스 재무장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조세분쟁위원회의 법원 외 세금 분쟁 조정 기능의 운영을 결정함¹³⁾
 - 조세분쟁위원회는 Bill 4714/2020에 근거하여 2020년 8월 설치되었으나, 분쟁 해결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 재무장관의 결정이 필요하였음
- 이번 결정으로 납세자는 관세 분쟁을 제외한 세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미해결 분쟁에 대해 조세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2020년 10월 30일까지 논의가 보류된 사안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웹사이트(www.eefdd.gr)를 통해 전자로 제출할 수 있음

8) 2020. 12.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3만 3천원임

9)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 선별, 포장,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센터 혹은 물류 창고

10) 2020. 12.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089만원임

11) Government of Canada,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Supporting Canadians and Fighting COVID-19 - 4.8.2.1 Employee Stock Options," <https://www.budget.gc.ca/fes-eea/2020/report-rapport/chap4-en.html#48-A-Fair-Tax-System>, 검색일자: 2020. 12. 17.

12) 2020. 12.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72억 1,500만원임

13) News IBFD, "Greece - Greece Gives Effect to the Out-of-Court Tax Dispute Regime as of November 2020," November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1-24_gr_2 (accessed 17 Dec. 2020).



- 신청서에는 납세자 및 법적 대리인의 이름, 후원, 세금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및 정확한 주소를 명시하고, 변호사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조세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납세 관련 분쟁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과세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분쟁 중인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국가의 과세권이 만료된 경우
- 부적격한 세금증명서의 수령으로 분쟁 중인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국가의 과세권이 만료된 경우
- 명백하게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금 또는 벌금액의 수치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금 청구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리한 조세 제재를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가산세, 이자, 할증료 및 과태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조세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전자로 개최될 수 있으며, 결정은 다수결을 통해 이루어짐

- 납세자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세분쟁위원회의 제안 결정을 전달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그리스 - 과세 거주지 이전자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 도입]

■ 그리스 정부는 2020년 12월 4일 그리스로 과세 거주지를 이전하는 개인에 대하여 세금 감면정책을 도입함¹⁴⁾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의 소득세 및 특별 연대 기여금에 대해 50%의 감면을 적용함¹⁵⁾

- 직전 8년 중 7년 간 그리스의 과세 대상 거주자인 자
- EU/EEA 국가 또는 그리스와 행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자신의 과세 거주지를 이전한 자
- 그리스 국내법인 혹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과 종속고용 관계를 맺거나, 그리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
- 이후 최소 2년 이상 그리스에 거주할 것을 명시한 자
- 그리스 내 임금 고용과 개인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한하며,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과세 거주지 이전 신청은 그리스에서 근무하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14) News IBFD, "Greece - Greece Adopts a Tax Break for Individuals Transferring their Tax Residence to Greece," December 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2-04.gr_1, 검색일자: 2020. 12. 15.

15) News IBFD, "Greece - Greece Proposes a Tax Break for Individuals Transferring their Tax Residency to Greece," November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1-24.gr_3, 검색일자: 2020. 12. 17.

[독일 -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 현대화 법안 초안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11월 20일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안 초안을 발표함¹⁶⁾

-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를 단순화하고 연방 중앙 세무서(Federal Tax Office)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할당함
- 환급 신청, 세금 증명서 및 기타 필수 정보를 다루는 중앙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함
- 특정 로열티에 대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완화함¹⁷⁾

- 기존에는 해당 권리가 독일 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권리가 이용되는 장소와 상관없이 비거주자의 라이선스 또는 권리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당 권리가 독일 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함

- 개정된 법안은 모든 조세연도에 소급하여 적용함

- 외국인(non-resident company)에 대한 새로운 반 조약 쇼핑(anti-treaty shopping) 규정을 제안함¹⁸⁾

- 소득의 실소유자가 외국법인이 아니고 주주들이 조약상 혜택(treaty benefits)을 적용받지 않으며, 독일 내 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거부함

- 단, 외국법인을 두는 이유가 세금 혜택(tax advantage)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조약상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에는 해당 조항이 면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덴마크 - 녹색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탄소세 인상]

■ 덴마크 정부는 2030년까지 덴마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Green Tax Reform 1단계 계획을 2020년 11월 23일 발표하였음¹⁹⁾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에너지세를 강화할 예정이며, 광물 산업의 경우 2025년부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16)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on Modernization of Withholding Tax Relief Procedures (Nov 26, 2020); EY, German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law concerning the modernization of withholding tax relief and extraterritorial taxation of IP, <https://taxnews.ey.com/news/2020-2750-german-ministry-of-finance-publishes-draft-law-concerning-the-modernization-of-withholding-tax-relief-and-extraterritorial-taxation-of-ip>, 검색일자: 2020. 12. 18.; IBFD, Singapore Proposes Tougher Anti-Avoidance Measures in the Goods and Services Tax (Amendment) Bill, 2020. 10. 8.

17) Income Tax Act Section 49(1) No. 2(f) and No. 6.

18) Income Tax Act Section 50d(3).

19) IBFD, Government Announces Phase One Of Its Green Tax Reform, 2020. 11.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24.dk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 구체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1기가줄(G)당 4.50 덴마크크로네²⁰⁾였던 에너지세가 10.50덴마크 크로네²¹⁾까지 인상될 예정임
- 농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1기가줄(G)당 1.50덴 마르크크로네²²⁾에서 7.50덴마크크로네²³⁾까지 인 상될 예정임
- 당분간의 세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하여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45억덴마크크로네²⁴⁾의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오스트리아 - 코로나19 조치 및 이자 제한 규정 법안 의회 제출]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납세자 지원을 위한 법 안 초안이 2020년 11월 20일에 의회에 제출되었 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²⁵⁾
- 요식업, 문화 및 출판 부문에 5%의 할인된 VAT 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에 대한

VAT를 면제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및 의류 관련 수리 서비스에 10% 할인된 VAT 세율 을 적용함
- 이미 승인된 세금 유예 및 연체 벌금의 면제기한 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코로나19로 인한 통근비용에 대한 공제 조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코로나19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됨

■ 또한, 해당 법안에는 EU의 조세회피 방지 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2016/1164 제4조의 시행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300만유로²⁶⁾를 초과하는 기업의 이 자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EBITDA²⁷⁾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함
- 기존에는 EBITDA와 관련하여 이자비용의 세 액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²⁸⁾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20)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2원임

21)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94원임

22)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1원임

23)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3원임

24)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15억 4,200만원임

25) IBFD, Austrian Parliament Considers Draft Bill on COVID-19 Tax Measures, 2020. 11. 25.

26) 2021년 1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7,751만원임

27)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순이익을 의미함

28) EY, Austria to enact new interest limitation rule in accordance with EU ATAD as of 20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austria-to-enact-new-interest-limitation-rule-in-accordance-with-eu-atad-as-of-2021#:~:text=According%20to%20the%20interest%20limitation,includin%20those%20with%20non%2Daffiliates, 검색일자: 2020. 12. 28.

[영국 -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영국에서 생산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한 플라스틱포장재에 과세하는 플라스틱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PPT)를 도입함²⁹⁾

-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포장세를 도입하는 정책 보고서와 기술적인 부분의 논의를 위한 플라스틱포장세 법안 초안을 발간하였으며, 법안은 2022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단일의 플라스틱포장재에 대하여 1톤당 200파운드³⁰⁾의 세율로 과세됨
 - 12개월 동안 10톤 미만의 플라스틱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 기업은 면세됨
- 다음과 같은 경우 플라스틱포장재는 과세되지 않음
 - 재활용 플라스틱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어 제품의 무게에서 플라스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 허가받은 약품의 포장재로 즉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수입한 경우
 - 영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운송 포장재로 사용된 경우
 - 영국 국외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운송 포장

재로 사용되지 않고 플라스틱포장재 자체가 수출되는 경우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영국 - 혼성불일치제도 수정안 초안 발표]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혼성불일치제도를 일부 수정한 법안 초안과 공청회 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함³¹⁾

- 영국 과세관청은 기존의 혼성불일치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조항을 소급 적용하고, 일부 수정조항은 2021년도 예산안(Finance Act 2021)의 발효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기존의 영국 혼성불일치 법안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음
- 이중공제(double deduction)와 관련하여 ‘산입/공제불가소득(inclusion/no deduction inco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제3자의 부채와 관련하여 ‘함께 행동 규칙(acting together rule)’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201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함

29)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a-new-plastic-packaging-tax/introduction-of-a-new-plastic-packaging-tax>, (accessed December 17, 2020); EY, "UK Government issues details of new Plastics Packaging Tax effective 1 April 2022," 2020. 11. 16., https://www.ey.com/en_gl/tax-alerts/uk-government-issues-details-of-new-plastics-packaging-tax-effective-1-april-2022, 검색일자: 2020. 12. 17.

30) 2020. 12.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9만원임

31)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ments-to-the-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for-corporation-tax/amendments-to-the-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for-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0. 12. 17.; EY, "UK proposes to amend hybrid and other mismatches regime - implications for US multinationals," 2020. 11. 17., https://www.ey.com/en_gl/tax-alerts/uk-proposes-to-amend-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implications-for-us-multinationals, 검색일자: 2020. 12. 17.



-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산입/공제불가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중과세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제2591D조의 소득경감 혜택을 폐지함

- 실무상 일부 미국 그룹은 영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불인정 자회사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의 비용은 미국에서 공제되는 액수만큼 이중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공제액은 이중산입소득 또는 제2591D조 소득(특수관계자 이외의 제3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의해서만 공제 가능하였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함께 행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함께 행동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 제3자의 부채를 특수관계인의 부채 또는 지배그룹 내의 부채로 봄

- 기존에는 제3자인 채권자가 지분권자와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권자의 모든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혼성불일치제도가 적용되어 채권자의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음

-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이중산입소득(dual inclusion income)의 그룹 내 배분을 도입하고 면세 투자자

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예산안 발효 시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기존의 혼성불일치제도는 이중산입소득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중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를 수정하여 영국 그룹 내의 기업이 관련 신청을 한 경우 그룹 내에서 이중산입소득과 이중공제 액수가 일치하는 한도까지만 그에 따른 대응 규정이 적용됨

- 혼성체의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면세단체(연금 기금, 국부펀드, 자선단체 등)인 경우에 면세단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공제/불산입(deduction non-inclusion)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을 혼성체로 간주하지 않음

-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면세단체의 세부목록이 있음

- 개정사항은 EU 조세회피방지침(ATAD 2)과 BEPS Action 2 보고서에 따른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프랑스 - 2021년도 사회재정법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2021년도 사회재정법안을 공식 관보에 게재하여 사회보장분담세의 일부를 수정함³²⁾

- 법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도입함

32) Lé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665307>, 검색일자: 2020. 12. 17.; News IBFD, "France Enacts Social Security Finance Law for 2021," 2020. 1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16_fr.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제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부담세를 최대 3개월간 조건부 면제함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제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액수의 사회보장분담세 부담금을 조건부 지급함
- 모든 사용자에게 대하여 2020년도에 미납한 사회보장분담세와 이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와 과태료를 특별 면제할 예정이며, 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과세관청의 제안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네덜란드 -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함³³⁾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조세정책의 적용기한을 2021년 4월 1일까지 연장함
 - 긴급 납부기한 연장³⁴⁾
 -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행해야 하는 기한과 관련한 행정적인 의무에 대

- 하여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일시적 지연 허용
- 코로나19 기간 동안 독일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한 독일과의 상호협약
- 독일과의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독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보장보조금에 대한 면세 혜택
-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 새로 도입한 조세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및 출장요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있음
 - 2021년 4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키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 출장요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 재고 및 조정 비용의 일시적 인상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중국 - 2021년도 세법규정 개정안 발표]

- 2021년도 세법규정 개정안에는 광고 및 홍보비용 소득공제와 저소득 근로자 원천징수 규정이 포함됨
- 중국 재무부는 2020년 11월 27일 [2020] 제43호 회람에 광고 및 홍보 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개정

33) Rijksoverheid, <https://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financien/nieuws/2020/12/09/kabinet-versterkt-vangnet-voor-bedrijven-en-banen>, 검색일자: 2020. 12. 17.; News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Extends, Introduces Tax Measures," 2020.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9_nl_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34) 이 제도는 기존 적용기한이 2021년 1월 1일이었음



안을 발표함³⁵⁾

-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장품, 약품, 무알코올 음료 제조와 판매 관련 기업들은 과세연도 수입 총액에서 광고 및 홍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함³⁶⁾
 -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의 30%로 제한되며, 공제한도 초과된 금액은 차후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함
- 분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연도에 발생한 광고 및 홍보 비용은 연간 매출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전부를 소득공제받거나 분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일부 비용을 귀속시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단, 담배, 알코올 주류 제조와 판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광고 및 홍보 비용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 중국 국세청은 2020년 12월 4일에 SAT(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고시 [2020] 제19호에 저소득 근로자 원천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³⁷⁾

- 2021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년도 연간소득이 6만원³⁸⁾ 미만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 중국 개인소득세법 6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납부세액 계산 시 연간 표준공제 총액이 6만원 안이기 때문임³⁹⁾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간 소득이 6만원 미만인 원천징수 대상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전년도 연간 소득이 6만원 미만’이라는 각주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함
 - 만약 특정 달에 직원의 누적 급여가 6만원을 초과하면, 특정 달에 초과한 소득과 현 과세연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인도네시아 - 코로나19 백신 관련 세제혜택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1월 26일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에 관한 세제혜택을 발표함⁴⁰⁾
 -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면제됨

35) 关于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扣除有关事项的公告,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012/t20201207_3633090.htm, 검색일자: 2020. 12. 17.

36) IBFD, China Updates Rule on Deduction of Advertisement and Promotion Expen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11_cn.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37) IBFD, China Amends Withholding Rule for Low Income Employe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8_cn.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38)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10만원임

39)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번역본(2018. 8. 31. 개정)』, 2020. 10. 14.,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1102&AST_SEQ=1086&, 검색일자: 2020. 12. 17.

40)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Grants Tax Incentives for Import of COVID-19 Vaccin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8_id.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코로나19 백신 수입과 유통에 대한 세제혜택 지침인 재무부 규정 제188호(No.188/PMK.04/2020: PMK-188)를 발표함⁴¹⁾

- 코로나19 백신 생산·접종에 필요한 원재료 및 장비 등을 포함한 수입에서 관세(Import duty), 특별소비세(Excise duty),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Sales tax), 소득세법 제22조⁴²⁾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됨
 - 세제혜택은 보세창고를 통한 수입에 한하여 적용되며, 백신을 보세창고, 경제특구지역, 수출전문기업 등에 유통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 관련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⁴³⁾

- 기관 또는 기업은 최초 수입 시 세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제출하면 됨
 - 신청서 제출 후 세제혜택 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세제혜택을 신청한 기관 또는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 관련 세제혜택 외의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100~500%에 이르는 가산세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인도네시아 - 옴니버스 법률안에 따른 추가 세법 개정안 발표]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2020년 11월 25일, 11월 30일에 옴니버스 법률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 KERJA)⁴⁴⁾에 따른 추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⁴⁵⁾

- 옴니버스 법안은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 고용, 환경 관련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⁴⁶⁾
 -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3개월 이내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특정 기간을 발표할 예정임

■ 2020년 11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됨⁴⁷⁾

41) No.188/PMK.04/2020: PMK-188, <https://peraturan.bcperak.net/sites/default/files/peraturan/2020/188-pmk04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7.
 42)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08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https://dpr.go.id/dokjdi/document/uu/UU_2008_36.pdf, p. 29., 검색일자: 2020. 12. 17.
 43) No.188/PMK.04/2020: PMK-188, <https://peraturan.bcperak.net/sites/default/files/peraturan/2020/188-pmk04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7.
 44) JAGA EKONOMI INDONESIA, PEMERINTAH BERHARAP OMNIBUS LAW PERPAJAKAN DAPAT SEGERA DIUNDANGKAN, <https://www.pajak.go.id/sites/default/files/2020-02/SP%2004%20-%20Omnibus%20Law%20%28FINAL%29.pdf>, 검색일자: 2020. 12. 18.
 45) IBFD, President Signs Omnibus Bill on Job Cre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10_id_1#tns_2020-11-10_id_1, 검색일자: 2020. 12. 18.
 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호, 2020, pp. 25~26.
 47) IBFD, Indonesia Introduces Tax Exemptions Under New Law on Job Cre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25_id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 개정안에 따르면 ①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거주 기업(Resident company), 협동조합, 국영기업이 수령한 경우, ② 특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이 받은 배당금인 경우, ③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해외 고정사업장의 세후 소득을 인도네시아의 다른 사업활동에 투자한 경우, ④ 사회·종교단체 또는 기관이 잉여금을 4년 이내에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도입할 예정임

■ 2020년 11월 30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법과 세법에 대한 일반 조항 및 절차법(General Provision and Procedure on Taxes Law: GTL) 개정안이 포함됨⁴⁸⁾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 위탁에 따른 과세물품의 인도나 양도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자본투입 목적의 주식 교환 또는 자산의 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기업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 개업 전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 중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탄광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인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이름, 주소, 여권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포함해야 함

- 세법에 대한 일반조항 및 절차법 개정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기존 과세표준의 2%에서 1%로 낮춤
-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조세법칙 사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서(Tax Assessment letters)가 발급되지 않음
- 세금징수서(Tax Collection Letter) 발급 시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뉴질랜드 -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 개정안 국회 의결]

■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12월 2일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뉴질랜드 국회는 12월 3일 개정안을 의결함⁴⁹⁾

■ 개정안에는 2021~2022년 과세연도 동안 개인 소득세,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 tax),⁵⁰⁾ 근로

48) IBFD, Indonesia Amends the Value Added Tax and Tax Administration Provisions under the New Law on Job Cre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30_id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49) The Taxation (Income Tax Rate and Other Amendments) Bill, <https://www.ird.govt.nz/updates/news-folder/the-taxation-income-tax-rate-and-other-amendments-bill>, 검색일자: 2020. 12. 15.

50) 복리후생세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외의 혜택을 말함. 대표적으로 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가용,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저금리 대출, 직원의 질병·사고·사망 시 혜택받는 기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부, 회사에서 가입하는 특정 연금·보험제도가 있음. 직원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받는 경우 고용주는 복리후생세금을 납부해야 함

자 퇴직연금(The 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SCT)에 대한 최고소득 과세 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됨

-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을 개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⁵¹⁾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은 약 8만 6,700명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약 5억 5천만뉴질랜드달러⁵²⁾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나, 원천징수세(Resident Withholding Tax: RWT)⁵³⁾에 대한 최고세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 2021~2022년 과세연도 동안 개인의 연간소득에는 18만뉴질랜드달러⁵⁴⁾를 초과할 경우 개정된 최고세율인 39%가 적용됨⁵⁵⁾

- 기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3%는 2021~2022년 과세연도 동안 7만뉴질랜드달러⁵⁶⁾에서 18만 뉴질랜드달러 구간에 적용됨⁵⁷⁾

- 뉴질랜드 복리후생세에는 12만 9,680뉴질랜드달러⁵⁸⁾를 초과할 경우 개정된 최고세율인 63.93%가 적용됨⁵⁹⁾

- 기존 복리후생세금 최고세율인 49.25%는 5만 5,981뉴질랜드달러⁶⁰⁾에서 12만 9,680뉴질랜드달러 구간에 적용됨

- 뉴질랜드 근로자 퇴직연금에는 21만 6천뉴질랜드달러⁶¹⁾를 초과할 경우에 최고세율 39%가 적용됨⁶²⁾

- 기존 근로자 퇴직연금 최고세율인 33%는 8만 4,001뉴질랜드달러⁶³⁾에서 21만 6천뉴질랜드달러 구간에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치을 연구원>

51) IBFD, Labour Party Proposes Higher Individual Tax Rat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9-10_nz_1#tns_2020-09-10_nz_1, 검색일자: 2020. 12. 15.
 52)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56억 7,250만원임
 53) Resident Withholding Tax on interest(RWT)payer's guide,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200---ir299/ir283/ir283-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8.
 54)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931만원임
 55) IBFD, Parliament Passes Taxation (Income Tax Rate and Other Amendments)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4_nz_1.html, 검색일자: 2020. 12. 15.
 56)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17만원임
 57) IBFD, Minister of Revenue Outlines Government's Tax Agenda,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30_nz_1#tns_2020-11-30_nz_1, 검색일자: 2020. 12. 18.
 58)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8만원임
 59) Fringe Benefit Tax Guide,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400---ir499/ir409/ir409-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8.
 60)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93만원임
 61)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703만원임
 62) Employer's guide Information to help you with your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300---ir399/ir335/ir335-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8.
 63)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26만원임



[EU - DAC7 관련 합의 도출 및 DAC8 작업 착수]

■ EU는 2020년 11월 21일 강제정보보고 행정협력 지침(DAC7)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DAC7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국의 내국 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⁶⁴⁾

- EU 집행위원회는 OECD 모델 보고 규칙의 대상 활동(교통, 부동산 자산 임대, 배달 및 법률 업무와 같은 개인 서비스)에 더하여 상품 판매, 투자,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관련한 대출도 포함하여 대상활동으로 제안하였음
 - 일부 회원국은 상품 판매를 포함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합의안은 클라우드 펀딩 관련 대출만 제외함
- 적용 영역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역외 플랫폼을 포함하였으나 회원국은 규칙 적용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
 - 합의안에 따르면 EU 외의 관할국과 EU 회원국 사이에 동일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정한 적

절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역외 플랫폼은 EU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이 조항은 역외 플랫폼이 설립된 EU 외의 관할국이 DAC7과 동등한 수준의 강제 정보 보고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EU는 2020년 11월 23일 DAC8과 관련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⁶⁵⁾

-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투명성 강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행정협력지침(2011/16/EU)의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crypto assets)과 사이버머니(e-money)로 확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 목적으로 적절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DAC8)에 착수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도입한 ‘디지털 재정 전략(digital finance strategy)’에 따라 DAC8과 관련한 작업을 하고, 시장에 기초한 규제 수단 및 법 제도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자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64) Tax Notes International, "EU Reaches Consensus on DAC 7," November 30, 2020, pp.1224~1225.

65) Tax Notes International, "EU to Expand Exchange To Cryptoassets, E-Money Under DAC 8," 2020. 11. 30., p.1226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이사회,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 최종 승인(2020. 12. 17.)^{1), 2)}
 - (역할) 회복기금인 Next Generation EU를 포함한 다년도 재정체계는 코로나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과 기업,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디지털에 중점을 두고 회복력 강화를 통해 향후 당면할 과제에 잘 대응하도록 할 예정
 - (규모) 이사회가 장기 예산인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7년간 1조 743억유로 규모(2018년 가격기준)의 예산이 확정
 - 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 7,500억유로를 포함하여 총 1조 8,243억유로
 - (주요 내용) EU는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에 1,328억유로, 결속과 가치 분야에 3,778억유로를 지출할 예정이며, Next Generation EU 예산을 합산할 경우 각각 1,434억유로, 1조997억유로로 증가(<표 1> 참조)

- 천연자원 및 환경 분야에는 3,564억유로가 배정되었으며, Next Generation EU 예산 합산 시 3,739억유로
- 이주 및 국경 관리 분야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향후 7년간 227억유로이며, 132억유로가 보안 및 방어 분야에 지원될 예정. EU 주변 국가와 세계를 위한 자금 지원은 984억유로로 편성
- (신규 및 강화 프로그램) 장기 예산과 Next Generation EU 예산 총액의 50% 이상을 아래 정책 등에 투자함으로써 EU는 현대화를 지원하고, 30% 이상을 기후변화 대처에 배정
 - (현대화) 연구·혁신(Horizon Europe), 기후 및 디지털 전환(Just Transition Fund, Digital Europe programme), 회복 및 복구(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새로운 보건프로그램(rescEU)에 배정
 - (기후변화) EU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처에 지원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와 젠더 관련 이슈에도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
- (향후 단계) 분야별 EU 프로그램은 2021년 초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 초로 소급 적용될 예정
 - 7,500억유로³⁾ 규모의 회복기금인 Next

1) EU 이사회,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2021-2027 adopted," 2020. 12.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12/17/multiannual-financial-framework-for-2021-2027-adopted/>, 검색일자: 2020. 12. 18.

2)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adoption of the EU's long-term budget for 2021-202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the-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 검색일자: 2020. 12. 18.

3) 이 자금의 대부분인 6,725억유로는 회복 및 복구수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투자와 개혁을 지원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정



<표 1>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MFF)

(단위: 십억유로, %)

구분	MFF 2021~2027 (승인 기준)	Next Generation EU	합계
1.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	132.8	10.6	143.4
2. 결속(Cohesion)과 가치	377.8	721.9	1,099.7
3. 천연 자원과 환경	356.4	17.5	373.9
4. 이주 및 국경관리	22.7	-	22.7
5. 회복력(Resilience), 보안 및 국방	13.2	-	13.2
6. EU 주변국 및 세계	98.4	-	98.4
7. 공공행정비용	73.1	-	73.1
합계	1,074.3	750	1,824.3

출처: EU 이사회,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2021-2027 adopted,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12/17/multiannual-financial-framework-for-2021-2027-adopted>

Generation EU의 집행을 위해서는 EU 자체 수입에 관해 모든 회원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함

- Next Generation EU가 발효되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 분야별 입법과 자금 조달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지원하고 대규모 파산을 예방했으며 경제회복을 돕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G20 정상들의 연대 및 다자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 (보건위기 종식) 국제사회는 백신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으로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함

• 이 경우 회복에 가속도가 붙어 세계 소득(global income)은 2025년까지 약 9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회복) 위기로 인한 충격의 장기화를 막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 확대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IMF

■ IMF 총재,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2020. 11. 22.)⁴⁾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G20 국가들은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4)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11/22/pr20353-imf-managing-director-kristalina-georgieva-urges-g20-leaders-build-better-global-economy>

- G20 국가들이 협력하는 경우, 각국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비해 3분의 2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기반 마련)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보다 건전한 세계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G20 국가들은 다자 무역체계를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 지속가능한 조세시스템 구축, 새로운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배소민 위촉연구원 >



OECD

■ 경제전망 보고서 Economic Outlook - December 2020 발표(2020. 12. 1.)⁵⁾

-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0년 -4.25%, 2021년 4.25%, 2022년 3.75%로 전망⁶⁾ (<표 2> 참조)
- (가정) 경제전망은 신종 바이러스 발생이 억제되고, 2021년 말까지 백신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짐
- (경제성장률) 향후 2년 동안 세계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GDP 성장

- 률은 2021년 4.25%, 2022년 3.75%로 전망
- (실업률)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2020년 4사분기 7.25%에서 향후 2년 동안 약 0.75%p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일부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임금 및 고용 지원제도가 종료되면서 고용 증가율이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 2021년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고, 2022년 말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신흥국 물가상승률 또한 향후 2년 동안 완만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구조적 기초재정수지⁷⁾)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통해 재정기조(fiscal stance)를 예측한 결과, 2020년 GDP 대비 4.2%의 재정 완화, 2021년 0.7%의 재정긴축이 예상됨
- (무역성장률) 세계무역은 2020년 10.2% 감소한 후 2021~2022년 동안 연평균 4.25% 증가하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투자회복 약세와 봉쇄 조치 가능성이 국제여행 및 관광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별 경제전망)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주요 위험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전망을 시행

5) OECD Newsroom, "Continued fiscal support and public health action needed to make hope of recovery a reality," 2020. 12. 1, <http://www.oecd.org/newsroom/continued-fiscal-support-and-public-health-action-needed-to-make-hope-of-recovery-a-reality.htm>

6) 기준선(baseline) 전망에 해당

7) underlying primary balance: 경기변동과 일회성 지출을 제외한 구조적 재정수지에서 국제에 대한 이자 지급분을 뺀 재정수지로, 경기변동 및 재정지출 등의 정책 요인을 고려하여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



<표 2> 세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0 Q4	2021 Q4	2022 Q4
실질 GDP 성장률								
세계	3.3	2.7	-4.2	4.2	3.7	-3.0	3.8	3.8
G20	3.5	2.9	-3.8	4.7	3.7	-2.3	3.6	3.9
OECD	2.2	1.6	-5.5	3.3	3.2	-5.1	3.7	2.9
미국	2.5	2.2	-3.7	3.2	3.5	-3.2	3.4	2.9
유로 지역	1.8	1.3	-7.5	3.6	3.3	-7.3	4.7	2.9
일본	0.9	0.7	-5.3	2.3	1.5	-3.2	2.0	1.5
Non-OECD	4.3	3.6	-3.0	5.1	4.2	-1.2	3.8	4.5
중국	6.8	6.1	1.8	8.0	4.9	5.4	4.1	5.4
인도	6.8	4.2	-9.9	7.9	4.8	-	-	-
브라질	-0.5	1.1	-6.0	2.6	2.2	-	-	-
실업률	6.5	5.4	7.2	7.4	6.9	7.2	7.3	6.6
인플레이션	1.7	1.9	1.5	1.4	1.6	1.2	1.5	1.7
재정수지(GDP 대비)	-3.2	-3.0	-11.5	-8.4	-5.7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3.3	1.0	-10.3	3.9	4.4	-9.9	5.1	4.1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 December 2020, Table 1.1.

- (긍정적(upside) 시나리오) 백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배포되어 신뢰를 높이고 지출이 반등됨을 가정

- (경제성장률) 세계 GDP 성장률은 기준선 전망 대비 2021년 약 0.75%p, 2022년 약 1.75%p 높은 5%, 5.5%로 전망([그림 1] 참조)
- (정부채무) 중위(median) 선진국의 경우 2022년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약 4%p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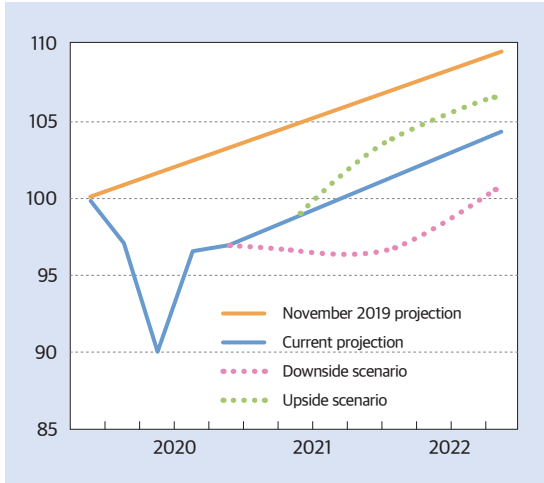
- (부정적(downside) 시나리오) 효과적인 백신 생산 및 배포와 관련하여 난관이 커지면서 격리 조치 기간 연장, 신뢰 약화 지속, 불확실성 심화 등을 가정

- (경제성장률) 세계 GDP 성장률은 기준선 전

망 대비 2021년 2.75%p, 2022년 1.5%p 감소할 것으로 전망([그림 1] 참조)

- (정부채무) 중위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2022년까지 7.5%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책 권고)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여러 국가에서 재유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뢰를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과 지원적(supportive) 거시경제 정책 및 구조정책이 필요
- (공중보건 정책) 예방접종이 널리 시행될 때까지 신종 코로나19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인 공중보건 개입이 여전히 필요함

[그림 1] 시나리오별 경제전망



주: Index 2019Q4 = 10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 December 2020, Figure 1.16.

- 정부는 대규모 검사, 추적 및 격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감염 급증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유지하며, 적절한 의료 역량과 의료용품 재고를 확보해야 함
- 개인보호 장비, 물리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의 광범위한 사용 등의 조치도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됨
- (통화정책) 계속되는 위기 동안 수요에 대한 강력한 지원, 주요 신용시장에 대한 백스톱⁸⁾ 제공 및 금융 안정성 보장은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함
 - 특히 긴급대출 및 은행대출 지원과 관련해

- 현재 프로그램 내 여유자원(buffer)이 여전히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 확장할 수 있음
- (재정정책) 봉쇄 조치가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한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원 정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된 초기 광범위한 지원은 구조적으로 수요 약세에 직면한 부문에서 노동력과 자본 재배치를 촉진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점차 변화되어야 함
- (구조정책)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 경제 역동성(economic dynamism)⁹⁾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부문과 경제활동에서 노동력 및 자본 재배치를 촉진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 FY2021 회계연도의 다섯 번째 임시예산안과 함께 최종 정규예산(Consolidated Appropriations

8) 주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해 특별대출제도 등을 신설하여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의미

9) 기업이 정신의 발현 등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파괴 및 혁신의 속도 또는 규모로 정의(이정익·조동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조사통계월보』, 2017년 9월호, 한국은행, 2017, p. 16)



Act, 2021; H.R. 133) 통과 의결(2020. 12. 21.)¹⁰⁾ 후
트럼프 대통령 법안 서명 완료(2020. 12. 27.)¹¹⁾

* 의회는 FY2021 정규세출예산법 안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규정

* 최종 정규예산안(H.R. 133)은 상원 통과(12. 21.) 후, 12월 24일에 대통령 실로 이송

- (예산 구성 및 규모) 2021 회계연도에 총 5개의 임시 예산안(CRs)이 통과된 바 있으며, 총 12개 세출예산 분야가 모두 포함된 이번 예산안은 약 1.4조달러 규모로 확정

■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집행한 행정명령 서명(8. 8.) 이후, 의회 상·하원이 의결(12. 21.)한 추가 코로나 대응 지원 입법(H.R. 133)에 서명 완료(2020. 12. 28.)

* H.R. 133은 FY2021 회계연도 정규예산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 입법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정책은 3차 지원책에서 시행했던 재난지원금과 함께 실업수당,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등 다수의 정책이 다시 포함되었으며, 백신 배포 지원 등의 신규 예산도 규정되어 있음

- 지원책의 총규모는 약 9,200억달러이며, 주요 조세·재정 정책은 아래와 같음¹²⁾

- (중소기업) 약 3,250억달러 소요 추정
 - 급여보호프로그램(PPP: 2,840억달러), 긴급 재난대출(EIDL) 선지급금(200억달러), 행

사·공연장(venues) 등에 지원하는 긴급 보조금(150억달러) 등

- (실업수당) 약 1,200억달러 소요 추정
 -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1주 연장하며, 주당 300달러(300달러/주) 지급
- (재난지원금) 1,660억달러 소요 추정
- (교육) 820억달러 소요 추정
 - 초·중·고(K-12) 교육 보조금 540억달러, 고등교육 보조금(200억달러), 영리학교(for-profit colleges) 재정지원(10억달러) 등
- (보건) 560억달러 소요 추정
 - 코로나 진단 테스트·역학조사·완화를 위해 주정부 지원금(220억달러), 백신 조달 및 공급(290억달러), 의료진 지원(90억달러) 등
- (교통) 450억달러 소요 추정
 - 항공사 직원 급여 지원(160억달러), 교통 인프라 보조금(140억달러), 버스 및 여객선 서비스 공급자 보조금(20억달러), 공항 보조금(20억달러) 등
- (기타 지출) 830억달러 소요 추정
 - 영양(nutrition) 및 농업 프로그램(260억달러), 임대 지원(250억달러), 보육 보조금(100억달러), 육아 보조금(100억달러) 등
- (조세) 400억달러 소요 추정
 - 업무용 접대비(business meals) 공제 재도입

10) 미 의회 상·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Summary%20of%20H.R.%20133%20Appropriations%20Provisions.pdf>

11)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bill-announcement-122720/>

12)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Summary%20of%20H.R.%20133%20Coronavirus%20Relief%20Provisions.pdf>

<표 3> 코로나19 대응 및 완화를 위한 지원책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중소기업 지원	3,250
실업수당 연장(300달러/주)	1,200
재난지원금(1인당 600달러)	1,660
교육	820
보건	560
교통	450
기타	830
조세	400
합계	9,200

출처: CRFB, What's in the Final COVID Relief Deal of 2020, 2020. 12. 21.

(60억달러), 고용 유지를 위한 세금공제 연장 및 확대(200억달러), 고용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지원(Employer-Paid Student Loan)에 대한 소득세 2025년까지 면제(30억달러), 유급 병가휴가 세금공제 2021년 3월 까지 연장(20억달러) 등

[기타]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 동결(2020. 12. 16.)¹³⁾
 - 기준금리를 0~0.25%, 법정·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0.1%로 동결

<표 4> 연준 경제전망(2020년 12월, 중앙값)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장기
경제성장률	-2.4	4.2	3.2	2.4	1.8
(9월 전망)	-3.7	4.0	3.0	2.5	1.9
실업률	6.7	5.0	4.2	3.7	4.1
(9월 전망)	7.6	5.5	4.6	4.0	4.1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1.2	1.8	1.9	2.0	2.0
(9월 전망)	1.2	1.7	1.8	2.0	2.0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1.4	1.8	1.9	2.0	-
(9월 전망)	1.5	1.7	1.8	2.0	-
기준금리(FFR)	0.1	0.1	0.1	0.1	2.5
(9월 전망)	0.1	0.1	0.1	0.1	2.5

주: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실질 GDP 또는 물가의 전년 4분기 대비 당해 4분기 퍼센트 변화, 실업률은 당해 4분기 평균,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 장기 전망치는 적절한 통화 정책하에서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없을 때 각 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

출처: Fed, Federal Reserve Board and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lease economic projections from the December 15-16 FOMC meeting, 2020. 12. 16.

-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매월 자산 보유를 국채 800억달러 이상, 주택저당증권 400억달러 이상 확대하겠다고 명시
- 결정문과 함께 공개된 경제전망표¹⁴⁾에 따르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9월 전망치 4.0%에서 상향 조정된 4.2%로 전망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장준희 선임연구원>

13)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0. 12. 16.,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1216a.htm>
 14) Fed, Federal Reserve Board and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lease economic projections from the December 15-16 FOMC meeting, 2020. 12. 16.,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1216b.htm>



일본

[예산·결산 등]

■ 내각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발표(2020. 12. 8.)¹⁵⁾

● 12월 8일 임시각의를 통해 사업규모 73.6조엔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을 발표

● (목적)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예산·규제·세제, 나아가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경제대책으로 2021년 이내에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규모) 국비 지출은 30.6조엔, 재정투융자를 비롯한 재정지출은 40조엔, 민간투자를 포함한 사업 규모 총액은 73.6조엔으로 GDP의 3.6% 상승효과를 전망하고 있음

- (재원)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FY2020 추경예산안과 FY2021 당초예산안에 계상될 예정

● FY2021 당초 예산안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책에 사용 가능한 예비비 5조엔을 추가 계상

●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크게는 “지키는” 관점으로 의료제공체제의 확보 등 감염 확대 방지대책 및 고용과 사업 지원에,

“적극적 지원” 관점에서 녹색·디지털화 등 성장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구성됨

- (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책) 긴급포괄지원교부금 증액(병상, 숙박요양시설 확보 등), 백신 접종체제 정비 및 치료제 확보를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지방창생임시교부금 1.5조엔 증액 등

- (II.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Go To 캠페인을 2021년 6월까지 연장, 고용조정 조성금 특례 조치를 2021년 2월까지 연장(고용 상황에 따라 단계적 축소), 긴급 소규모 자금 특례 조치를 2021년 3월까지 연장, 주거확보급부금지원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연내 신규 청구분),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위해 기업 연구개발 지원 2조엔 규모의 기금 창설, 중소기업 사업 전환 등 최대 1억엔 규모의 보조금 도입, 기업 탈탄소화투자를 추진하는 세제 추진¹⁶⁾ 등

- (III.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2021년부터 시작되는 2025년의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가칭)」을 위한 추진(사업규모 15조엔 정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재해 복구, 노후화 대책 등

- (IV.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비비의 적시 집행) 예기치 못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의 신속·적시 집행을 위한 필요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

15) 내각부,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16) 세제는 2021년 세계개정에 검토 예정

<표 5>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사업규모 및 재정지출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합계	국·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책	5.9	4.5	1.4	6.0
II.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18.4	13.4	5.0	51.7
III.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5.6	4.4	1.3	5.9
IV.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비비 적시 집행	FY2020	5.0	-	5.0
	FY2021	5.0	-	5.0
합계	40.0	32.3 ¹⁾	7.7 ²⁾	73.6

주: 1) 국비는 30.6조엔이며, 이 중 FY2020 3차 추경예산은 20.1조엔(일반회계 19.2조엔, 특별회계 1.0조엔)임

2) FY2020 3차 추경 추가액은 1.4조엔임

출처: 내각부, 「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令和2年12月8日閣議決定)」(令和2年12月8日), pp. 50~51 재구성

- 현 시점에서 본 경제대책에 의한 실질 GDP 효과는 3.6% 정도로 전망
 - 2020년 0.5% 정도, 2021년 2.5% 정도, 2022년 이후 0.6% 정도
 - 또한 본 경제대책에 의한 고용 유지 및 창출 효과는 2021년도까지 대략 60만명 정도로 전망됨

■ 재무성, FY2020 일반회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 사용실적(2020년 12월 11일 현재) 발표(2020. 12. 11.)¹⁷⁾

- 재무성은 11.5조엔 규모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 사용 실적 및 내용을 <표 5>와 같이 발표함

■ 재무성, FY2020 제 3차 추경예산 각의 결정(2020. 12. 15.)^{18), 19)}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일본 사회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8일 각의 결정된 경제대책에 의해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
 - (세입)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국채 22조 3,950억엔 발행 및 전년도 잉여금 수입 6,904억엔에 세입 감소분 8조 3,889억엔을 제외한 15조 4,271억엔으로 집계됨
 - (세출)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대책에 의한 추가경비 19조 1,761억엔에 그 외 기정경비 감액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예비비 감액 등으로 총세출은 15조 4,271억엔

17)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0/sy021211.pdf

18)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0/hosei1215.html

19) 재무성, <https://www.mof.go.jp/filp/plan/fy2020/20201215.htm>



- (특별회계) 그 외 노동보험특별회계,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소요 보정이 있을 예정
- (재정투융자계획) 1조 4,341억엔이 추가되어 총 64조 2,671억엔이 됨(이 중 재정융자 121억엔, 산업투자 200억엔, 정부보증 20억엔)

■ 재무성, FY2021 예산안 각의 결정(2020. 12. 21.)²⁰⁾

- 재무성은, 3차 추경과 함께 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② 중장기적인 과제(디지털·그린 사회, 활력 있는 지방, 저출산 대책 등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FY2021 예산을 각의 결정
 - (세입) 세입 총액은 FY2020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례 공채²¹⁾ 증가에 기인함(46.4% 증가)
 - (세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06조 6,097억엔으로, 임시·특별조치를 제외한 FY2020 당초예산 대비 5.7% 증가(임시 특별 조치를 포함하면 FY2020 당초 예산 대비 3.8% 증가)
- 주요 세출 분야 대책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비비 5조엔 확보 및 3차 추경 예산으로 병상·숙박요양시설 확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체제 정비·접종 등을 실시. 또한 감염증 위기관리 체제·보

건소 정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위한 진료수가 임시 조치, 의료기기 국내 생산력 강화 등

- (디지털·그린 사회 실현) 2021년 9월에 민관 전문가 500여명 규모의 강력한 조정기능을 가진 디지털청 설치, 정보시스템 예산 일괄 계상을 통해 3천억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전체 정보 시스템을 일괄 관리. 그린 사회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기업에 대한 성과연동형 저리융자제도 창설(향후 3년간 1조엔 규모) 및 ESG 투자 유치 지원을 실시
- (활력 있는 지방) 지역활성화의 자주적·선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1천억엔)」의 이주지원사업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업·지자체를 매칭 지원하는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사업(1.2억엔)」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인재와 일의 흐름을 확대
- (세출개혁) 「골태방침」에 결정된 세출개혁을 계속하여 그 기준을 달성하며, 예산의 질 또한 향상시킬 방침
 - 사회보장관계비 +1,507억엔(의료비 동향을 감안한 전년 대비 실질 증가액은 +3,500억엔 정도)
 - 비사회보장관계비 +330억엔(지금까지의 대처 계속)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20)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1/seifuan2021/index.html

21) 재정법 제4조에 의해 건설 국채 발행 이외의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매년 특례 공채법을 제정하여 발행하는 적자국채



독일

[기타]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제22차 회의 개최 (2020. 12. 18.)²²⁾

- (경제전망) 연방정부의 가을전망에서 독일의 GDP는 2020년 -5.5%, 2021년 4.4%의 성장을 전망하며, 11월 세수추계에 따르면 2020년 약 8.9%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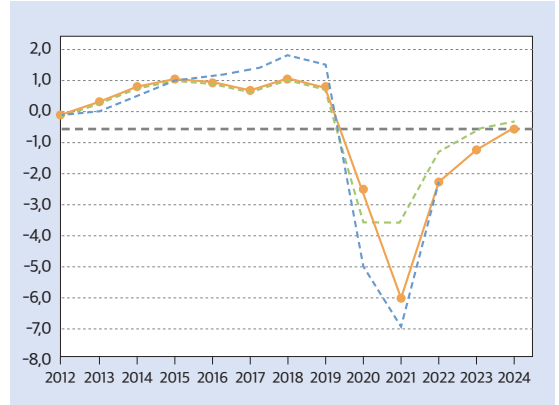
- 2022년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지만 이는 현재 봉쇄의 영향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 경로에 달렸다고 언급함
- 또한 확장적 재정기조는 기본법 제109조의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비상사태를 2021년까지 적용할 전망

- (재정전망) 금번 안정화위원회에서 전망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6% 수준으로 전망돼 지난 10월 전망 대비 악화됨

- 국가채무는 현재 GDP 대비 7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은 72.5%를 전망함
- 2020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5%에서 2021년 -6%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나 2024년 이후 유럽연합국의 공식적인 구조적 적자 허용치인 0.5%를 달성할 전망

- 한편 올라프 솔츠 연방재무부 장관은 독일의 확

[그림 2] 독일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주: - - - 재정수지(미조정), - - - 구조적 재정수지(2020년 10월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자료: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2020. 12. 18.

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지난 수년간의 지켜온 재정준칙이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켜 2020년 위기기간 충분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연방은행, 2021~2022년 경제전망 발표(2020. 12. 11.)²³⁾

-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5.5%, 2021년 3.0%, 2022년 4.5%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것을 강조함

- (경제전망) 독일의 2020년 3분기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가을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 1분기까지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전망

22) 연방재무부, 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 2020. 12.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12/2020-12-18-pressemitteilung-stabilitaetsrat.html>

23)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20. 12. 11., <https://www.bundesbank.de/en/tasks/topics/coronavirus-pandemic-continuing-to-shape-german-economy-853776>



<표 6> 독일 거시전망 주요 수치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계절 조정)	0.6	-5.5	3.0	4.5	1.8
실질 GDP 성장률 (계절 미조정)	0.6	-5.1	3.0	4.4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0.4	1.8	1.3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에너지 식품 제외)	1.4	0.7	1.5	1.3	1.5

출처: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20. 12. 11.

- 이후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민간지출) 2020년 상반기 민간지출은 가처분 소득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위기상황에 따른 불안감으로 저축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설명
- (일자리) 근로시간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일자리 보호정책으로 고용과 실업의 변동은 비교적 온건했다고 평가
- (소비자물가) 하반기 에너지 가격 하락과 일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요인이 반영되어 2020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0.4%로 크게 하락할 것을 전망함
- (재정전망)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년 GDP 대비 -5% 수준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채무비율 또한 GDP 대비 70%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선임연구원>



프랑스

[기타]

- 재정의 미래에 관한 위원회(la commission sur l'avenir des finances publiques) 설치(2020. 12. 4.)²⁴⁾
 - 국가 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10명의 전문가(전직 선출 공무원, 경제학자, 재정 전문가 등)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함
 - 해당 위원회는 다음의 시나리오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함
 - 공공채무의 안정화 및 점진적 감축을 목표로 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
 -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공채무 관리 전략 제시
 - 다년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재정 관리 수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2021년 2월 말 위원회의 중기전망 및 전략이 제시될 예정
- 프랑스 중앙은행, 거시경제전망 보고서 발표(2020. 12. 15.)²⁵⁾
 -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성장률은 2020년 -9%를 기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약 5%를 기록

24) 프랑스 정부, Installation de la commission sur l'avenir des finances publiques, 2020. 12. 4.

25)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Projections macroéconomiques - Décembre 2020, 2020. 12. 15.,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projections-macroeconomiques-decembre-2020>

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의 경제성장률은 긍정적인 경우 7%에서 부정적인 경우 -1%까지 나타날 수 있음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3년에도 4%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3년 120%까지 증가할 전망
- 가계소비는 2020년 3분기에 반등했다가 10월 말 이후 2차 봉쇄 조치로 다시 감소하여, 2020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영국

[기타]

- 주류 위주로 운영하는 펍에 크리스마스 보조금 지급 예정(2020. 12. 1.)²⁶⁾
 - (배경)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주류 판매 펍의 상당한 매출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 지원을 강화

- (지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별 제한 조치 ‘높음’(2단계) 및 ‘매우 높음’(3단계) 적용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펍으로 식품보다 주류를 위주로 제공하는 펍(wet-led pub)*

* 매출의 50% 미만을 식품 판매에서 창출

- (지원 금액) 크리스마스 보조금 1천파운드 지급(12월 한 달간 사업체당 1회)

■ 코로나19 고용 유지 지원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및 정부 기업 대출 지원 연장(2020. 12. 17.)²⁷⁾

- 코로나19 고용 유지 지원제도를 2021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 4차 보조금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제공

- 당초 2021년 1월 말 마감 예정이었던 정부 기업 대출 지원²⁸⁾ 신청은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

* 현재까지 680억파운드 이상의 보증 대출을 제공함

■ 보리스 존슨 총리,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종료 계획 발표(2020. 12. 12.)²⁹⁾

- 기후 목표 정상회의(Climite Ambition Summit) 공동 개최를 앞두고 영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6) HM Treasury, Prime Minister announces £1,000 Christmas grant for ‘wet-led pubs’, 2020. 12.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announces-1000-christmas-grant-for-wet-led-pubs>

27) HM Treasury, Chancellor extends furlough and loan schemes, 2020. 12. 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xtends-furlough-and-loan-schemes>

28) Bounce Back Loan Scheme,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29)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M announces the UK will end support for fossil fuel sector overseas, 2020. 12. 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announces-the-uk-will-end-support-for-fossil-fuel-sector-overseas>



NDC)³⁰⁾를 53%에서 68%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2020. 12. 4.)³¹⁾

-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함

* 지난 4년간 정부는 무역 진흥 및 수출 금융을 통해 영국의 석유와 가스 수출에 약 210억파운드를 지원함

-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원유, 천연가스, 발전용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금융, 자금 지원, 무역 진흥을 종료

- 내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전에 가능한 빨리 시행 예정

- 이 외에도 향후 5년간 국제 기후 금융(International Climate Finance)에 116억파운드, 다자간 녹색 회복 이니셔티브(Green Recovery Initiative)에 신규 1천만파운드 지원을 약속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발표(2020. 12. 4)³²⁾

- 5가지 통합서비스는 공유 서비스, 의료통합코드 서비스, 결제 서비스,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를 의미함

- (공유 서비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의료 데이터 및 서비스 통합, 스마트 의료서비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지역정보 상호 공유 등

• 오프라인 의료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및 비즈니스 협업 실현, 만성질환 환자 및 고위험군의 지표 데이터 관리, 인터넷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료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의료통합코드(一碼通) 서비스) 1인당 1개의 의료통합코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호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현재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마다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의료기관끼리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결제 서비스) 환자에게 다양한 온라인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처방 약제비 등에 대한 온라인 의료보험 정산시스템을 구축함

-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의사 진료 정보, 출생 및 사망 진단서, 데이터 공유 기반 시스템 마련, 예방접종 조회서비스 등의 편리한 정보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의약품·의료



중국

[기타]

- 국무원, 「인터넷 및 보건의료(互联网+医疗健康) 5대 통합(五个一) 서비스 심층 추진에 관한 통지」

30)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68% 이상 감축

31)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UK sets ambitious new climate target ahead of UN Summit, 2020. 12.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sets-ambitious-new-climate-target-ahead-of-un-summit>

32)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2/10/content_5568777.htm

기관·의료진에 대한 정보의 관리 강화 및 활용
- (전염병 방역 서비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정보기술 지원 강화, 조기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구축, 인터넷 방역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제시(2020. 12. 14.)^{33), 34)}

- 시진핑 총서기 주재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³⁵⁾에서 중국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외부환경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1년 경제정책 주요 방향을 제시함
- 생산·분배·유통·소비 등의 각 단계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 및 수요의 구조개혁이 필요
-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 하도록 해야 함
- 반(反) 독점 강화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통제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
-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 강화
-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 청서: 21년 중국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经济蓝皮书: 2021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보고서 발표(2020. 12. 14.)^{36), 37)}

- 중국사회과학원³⁸⁾이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7.8% 수준으로 전망함
- 2021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내수 확대, 경제구조 조정,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
- 재정적자 비율을 약 3%로 수준으로 조정하며 특별채권을 꾸준히 발행하고 전염병 특별 국고채 발행은 중단해야 함
- 기초연구를 통해 산업체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R&D 비용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평등한 기본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교육·문화·스포츠·노인요양·의료 등의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33) 인민넷, <http://finance.people.com.cn/n1/2020/1214/c1004-31965036.html>

34)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4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35)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전 핵심시기에 열린 회의로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 및 계획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36) 중국 제1경제, <https://www.yicai.com/news/100876402.html>, 검색일자: 2020. 12. 17.

37) 新浪財經, <https://finance.sina.com.cn/tech/2020-12-14/doc-iiznezxs6868085.shtml>

38)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최대 규모의 국립연구기관으로 국무원직속기관(国务院直属事业单位)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는 총 37개의 연구소가 속해 있음

재정포럼

2021년 1월호 통권 제295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1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1호(통권 제29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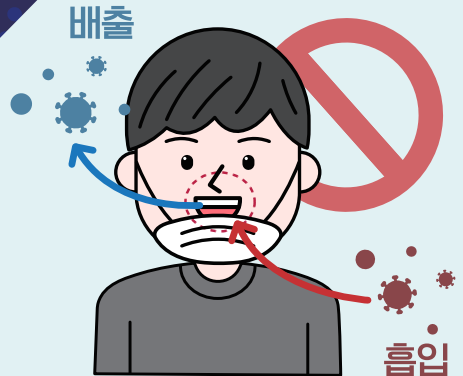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